

연구보고 2016-05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6-05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정 명 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thod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islation by Municipalities

연구자 : 정명운(연구위원)
Jung, Myong-Un

2016.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부주도의 재난대응 체계로 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험의 초기대응자로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역할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역의 수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서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능력제고와 국민의 안전강화에 있음

II. 주요 내용

□ 재난안전관리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개관함

- 법률상 재난안전관리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위기관리의 관계를 고찰하였음
-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상관관계 및 양자의 지향점을 고찰하고, 재난안전관리와 위기관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였음
-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이 프로세스가 법률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내용을 분석함

- 재난안전관리의 지향점인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법률상 규정내용을 분석하였음
- 중앙의 재난안전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의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와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음
- 국민안전처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남, 울산, 충북, 서울, 전북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부산시 8개, 시·군·구로서 서울 은평구,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4개를 그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에게 1. 재난안전관리 조직 체계, 2. 재난안전관리 업무, 3.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체계, 4.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5.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6. 재난안전관리의 한계, 7.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대항목과 이와 관련된 소항목을 정하여 인터뷰를 하였음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대응대책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대만은 수해방지구조업무계획을 참고하였으며, 일본은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 및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에서 작성한 ‘수해 Hazard Map 작성입문’자료를 참고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응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함

-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망 구축 및 안전 거버넌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였음
- 제도적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재

난안전관리업무 및 재난대응활동계획수립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언하였음

- 정책적 부분은 재난 예·경보발령체계, 지역안전공동체 형성으로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 조정, 종합적 재난 대응전략수립 방안을 제언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되는 기반조성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공동체 형성과 중앙부처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거버넌스와 안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주제어 : 재난안전관리, 지역안전공동체, 계획고권, 안전거버넌스, 안전생태계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 Disasters may happen anytime, anywhere and anyhow.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 has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place to prepare for uncertainties and risks of disasters.
-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government-led disaster response system. Therefore it does not guarantee municipalities to make their own first-line responses in the case of a disaster.
- Municipalities should strengthen their own disaster safety management schemes and make their roles more specific and concrete to make initial actions to disaster risks. Also, they should be able to safeguard life and properties of local residents.
- To this end, the municipal safety management schemes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y should be autonomously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ground for implementation of such local-level systems should be created.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ddress any inadequacy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municipaliti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management policies; upgrade their capabilitie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and improve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II. Main Contents

-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oncept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 The legal ground of categorization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to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has been analyzed to draw the implications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 The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by considering the correla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disaster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risk management.
 - The process for efficient and systematic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how the process is stated in the laws have been analyzed with the concerned legislations.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Legislation of Kore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 The structur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disaster risks and minimize the occurrence of disasters, the

objective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has been analyzed with the content stipulated in the law.

-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has been studied through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ich is the national control tower of Kore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laws and regulations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 municipalities as well as interviews with working-level officials.

- By referring to the outcomes of review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the status on disaster management of municipalities in 2015,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Ulsan Metropolitan Ci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eight cities (si) and counties (gun) of Gwangyang-si in South Jeolla Province, Paju-si in Gyeonggi Province, Yangsan-si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Namyangju-si in Gyeonggi Province, Haman-gu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Yongin-si in Gyeonggi Province, Chungju-si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four cities (si), counties (gun) and districts (gu) of Eunpyeong-gu and Seongdong-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Seo-gu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Geumjeong-gu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ve been studied for the status analysi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 municipalities in Korea.
-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at municipalities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 following items: 1. Organizational

structur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2. disaster safety management tasks; 3. system on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safety management; 4.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5.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for effici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6. limitations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7. matters necessary for systematic disaster safety management. Further detailed questions on the items above were asked to the officials concerned.

- Implications drawn based on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response measur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 The material on flood prevention and rescue work scheme of Taiwan and ‘Natural Disaster and Disaster Countermeasures of Japan’ from the Cabinet Office and ‘Introduction on Drawing Flood Hazard Maps’ from the Flood Control Planning Team at the River Environment Division of the Water and Disaster Management Bureau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have been used as reference to draw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and disaster response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of the countries.
-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Municipalities
 -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network and creation of safety governance and safety ecosystem.

-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made for measure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disaster safety management tasks and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municipalit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Policy proposal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forecast and warning system, adjustment of roles of public-private cooperative committee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by forming the regional safety community and crea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strategies.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setting the foundation for the municipal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y under the government-led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 This study will be beneficial in building the safety governance and safety ecosystem through the formation of regional safety communities by municipalities as well a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 Key Words : Disaster safety management, Regional safety community, Safety ecosystem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20
제 2 장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23
제 1 절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23
제 2 절 위기관리로서 재난안전관리	26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33
제 1 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관리	33
1. 법률상 재난안전관리 조직	33
2. 법률상 재난관리 방법	40
제 2 절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44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48
1.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51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66

제 4 절 소 결	86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93
제 1 절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93
1.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93
2.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97
3. 재난안전관리로서 수해대응대책	101
제 2 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110
1.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법제 개관	110
2. 재난안전관리로서 방재계획 체계	112
3. 재난 대응 및 대피 체계	114
제 3 절 시사점	123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25
1. 제도적 개선방안	125
2. 정책적 제언	135
참 고 문 헌	141
 《 부 록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149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터뷰 내용	2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에 있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의견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중요성을 반영한 제도적·조직 체계 준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계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라 하겠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¹⁾를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을 통해 문제시 되어 왔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²⁾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첫 걸음마를 본격적으로 띠었다고 하겠다.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의무이며,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 근거한다(제34조 제6항).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국가의 노력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며, 또한 그 의무를 헌법에 근거하여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³⁾ 물론 이러한 책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

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직제」 제3조에서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다.

2) 2014.12.30.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재난대응 체계 정비, ②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행사, ③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특수기동구조대 투입 및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참고바람.

3) 국가의 재난관리행정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헌법 제34조제6항 이외에, 헌법 전문, 제10조 및 제34조제1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도

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왜냐하면 지역 구성원인 주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국가와 동일하게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안전관리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⁴⁾. 특히 오늘과 같이 작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재난으로 인한 위협에 1차 대응자로서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최하위 계획인 시·군·구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재난이라는 위협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조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재난의 1차 대응자로서 또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할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재난 유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난, 특히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을 매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진과 무관한 나라, 혹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이란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있다. 문현철,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위기관리연구 제3권, 2009.12. P.78 재인용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참고 바람.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⁵⁾ 재난안전관리 그 것도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있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또는 경험은 하였으나 경험치 보다 큰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장과 중앙, 경찰·소방 등 재난대응의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재난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재난은 잠재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 이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하는 시스템과 재난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이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⁶⁾

이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의 초기대응자로서

5) 공감신문, ‘국회 지진토론회-저층 건물은 지진위험지대…내진 보강해야’, 2016.10.18.기사,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532>>, (2016.10.22.최종방문)

6)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체계정비와 관련하여 전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인 심우배 박사는 기반시설 활용 분담형 방재, 다목적 방재공원 조성, 광역피난소 확보, 참여형 방재시스템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경남신문, ‘경남 자연재해 대형화·빈번화(하) 구호·복구대책 촘촘하게’, 2016.10.20. 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4824>>, (2016.10.22.최종방문)

초기대응의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4단계의 관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능력제고와 국민의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우선 재난안전관리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개관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제3조 제3호·제4호)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를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는 위기관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보고서 제2장에서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상관관계 및 양자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와 위기관리의 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및 이 프로세스가 법률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연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시·도, 시·군, 시·군·구로 나누어 조사·분석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의 분석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이 제3장이다.

이에 관하여 보고서에서 법률상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방법을 분석한 후, 중앙의 재난안전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의 체계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 및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주요 외국은 어떠한 법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것이 제4장이다.

이 보고서에서 고찰한 주요 외국은 대만과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대상국은 지리적 특성과 발생하는 자연재난 유형이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재난안전관리-특히 자연재난-에 있어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조직·제도·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화와 정비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 등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대상국은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어 있어 본 보고서의 주요 테마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 대만은 수해방지구조업무계획을 참고하였으며, 일본은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 및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에서 작성한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자료를 참고하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응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망 구축 및 안전 거버넌스,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제도적 제언과 정책적 제언으로 되어 있다. 제도적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안전관리업무 및 재난대응활동계획수립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안하였고, 정책적 부분은 재난 예·경보 발령체계, 지역안전공동체 형성으로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 조정, 종합적 재난대응전략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서,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및 재난안전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서 재난안전관리의 의미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기관리 프로세스 및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PDCA 사이클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것을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및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현행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 법률에서 어떠한 프로세스 내지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리의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서, 재난안전관리의 지향점인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법률상 규정을 내용분석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초기대응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

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태조사방법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는 국민안전처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시·도, 시·군, 시·군·구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경남, 울산, 충북, 서울, 전북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부산시 8개, 시·군·구로서 서울 은평구,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4개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에게 1.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2. 재난안전관리 업무, 3.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체계, 4.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5.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 6. 재난안전관리의 한계, 7.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대항목과 이와 관련된 소항목을 정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세 번째로서, 비교법적 고찰을 연구방법의 하나로 하였다. 이 방법으로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대응대책을 제4장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교법적 고찰은 우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 내지는 현황을 선제적으로 적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우리의 당면 문제의 극복방안에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 보고서도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주요 외국-대만·일본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전술한 바임-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사례-수해대응대책-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로서, 국민안전처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기대응 체계로의 전환 정책 및 재난안전관리에서의

안전 거버넌스와 안전 생태계조성의 정부정책에 부합시키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것을 위해 보고서에서 제도적 부분은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초기대응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의의 및 지방자치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강화의 관점에서도 제언하였다. 정책적 부분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연계 강화, 그리고 지역안전공동체 형성 및 안전 거버넌스·안전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제언하였다.

제 2 장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제 1 절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⁷⁾ 상 재난 관리라 함은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제3호).⁸⁾

여기서 재난이란⁹⁾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 그리고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국민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사회적 재난을 포함(제3조 제1호)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제3조 제4호).¹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법’약칭은 2015년 법률제명약칭기준에 따른 것임. 법제처, ‘2015 법률제명약칭기준’, 2016.1.14.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Magazine/magazineData?pstSeq=71328>>, (2016.10.22. 최종방문)

8) 재난관리를 법률적 개념 이외에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을 위하여 재난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성기환·최문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제2호, 2014.2. P.330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것의 종류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10) 2004년 소방방재청 개칭 이전과 이후로 재난의 법률적 개념이 전환되었다고 한다. 권영세,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정책방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제 35권, 2005.11. P.30

여기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관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안전관리는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공통된 사항은 위험요소의 관리에 있다. 다만,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그 관리방안에 있어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라는 위험요소를 예방·대비라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대응·복구라는 사후적 관리방안을 통해 관리의 적정성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사회적 재난과 같이 예측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의 관리 보다는, 자연재난이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전관리는 재난의 위험요소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인명보호, 재산보호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의 관리방안이 재난관리보다 더 포괄적이라 하겠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에 있고, 이것의 보호를 위한 원인이 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관리활동에 있으므로, 양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양자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선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재난과 안전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는 재난, 재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재난안전법에서 도출되는 사항¹¹⁾이기도 하지만, 「헌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

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헌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다. 먼저 재난안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는 물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등과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도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에 포함하여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에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도 재난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²⁾ 이러한 재난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에 있어 재난안전법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제11조).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우리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지향점, 환언하면 재난의 위험요소 저감 및 위험요소로부터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이행하려고 법률로서 규범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12) 이에 관해 자세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2.

제 2 절 위기관리로서 재난안전관리

전술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가 재난의 위험요소 저감 및 위험요소로부터 생명·재산보호 방안으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 이것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위기관리 시스템, 환언하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와 관련된다.

먼저 위기관리의 의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위기관리는 보는 관점 및 직면한 문제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¹³⁾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점이 있을 경우는 국가위기관리에 방점을 둘 것이고, 어느 한 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합병 혹은 제품 리콜 등에 따른 경영악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기업경영 위기관리에 관점을 둘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기후변화 변동에 따른 지진,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에 관점을 둘 것이다.¹⁴⁾ 이렇듯 위기관리는 직면한 문제와 상황에 따라 그 적용 형태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¹⁵⁾ 따라서 위기관리의 의미를 더욱더 알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위기관리란 과연 무엇을

13) 佐々木一如, “危機管理における基礎自治体の役割－危機管理に関する市民と行政の認識の相違に関する考察－”, 政治学研究論集 第21号, 2005. 2., P.119

14) 민간부문에서의 위기관리목적은 순수 손실의 최소화로 인식하고, 공공부문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위적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이종열·박광국·조경호·김옥일, “국가위기관리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제2호, 2004.8., P.350

15) 佐々木는 일본의 경우 위기관리가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관리를 사용한 것은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이후라 하고 있다. 佐々木, “앞의 논문”, P.119 참고

의미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기관리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관리에 있어 “위기”의 의미를 찾아보면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표현하고 있고¹⁶⁾, “관리”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이라고 하고 있다¹⁷⁾. 이를 종합하면 ‘위기관리’란 사전적 의미¹⁸⁾에서 “재해, 비상사태 등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일”로 정리할 수 있다.¹⁹⁾

이 정리로만은 ‘위기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관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재해, 비상사태 등 위험상황 대처 발생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면, 위험상황 발생이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위험상황 발생이후의 사후적 대응·복구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위기관리’란 “재해나 비상사태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그 상황을 최소화하는 활동²⁰⁾”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²¹⁾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10.7. 최종방문)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10.7. 최종방문)

1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위기관리를 “천재나 인위적인 비상사태 따위의 상황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10.7. 최종방문)

19) 위기관리의 사전적 의미에서 중요한 변화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사건 또는 행동과정의 지속, 수정 또는 종결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으로서의 전환점으로 그 의의를 도출하는 견해도 있다. 이종열·박광국·조경호·김옥일, “앞의 논문”, P. 349

20) 한형서·이종서는 위기관리를 “위기발생을 전후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도 그 위기를 최소화 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한형서, 이종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위기관리시스템-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4(1), P.145, 반면에 이재은 위기관리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 하고 있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와 관료사회 부패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6, P. 41

21) 김해룡은 위기관리를 Risk Management로 보고 방재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이라고

그런데 위기관리의 대상인 재해나 비상사태는 사전에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나, 인위적 재난인 사회적 재난은 자연재난보다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광역적이고 또한 우리의 인명·재산·건강 등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관리 시스템²²⁾은 위기관리를 어느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명제, 환언하면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는 당해 주체나 현 상황에 따라 보는 관점과 그 대처방법, 최소화 방안도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정의 위기관리를 ① 위기요소 발견·분석 → ② 위기예방·대비 계획수립 → ③ 계획이행 → ④ 결과평가·보완 → ⑤ 학습의 5단계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최근에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이 활용²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 프로세스 및 PDCA 사이클을 재난안전관리에 접목하면 ① 과거의 재난발생 건수 또는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하고

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유로 방재활동과 구분된다고 한다.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2., P.21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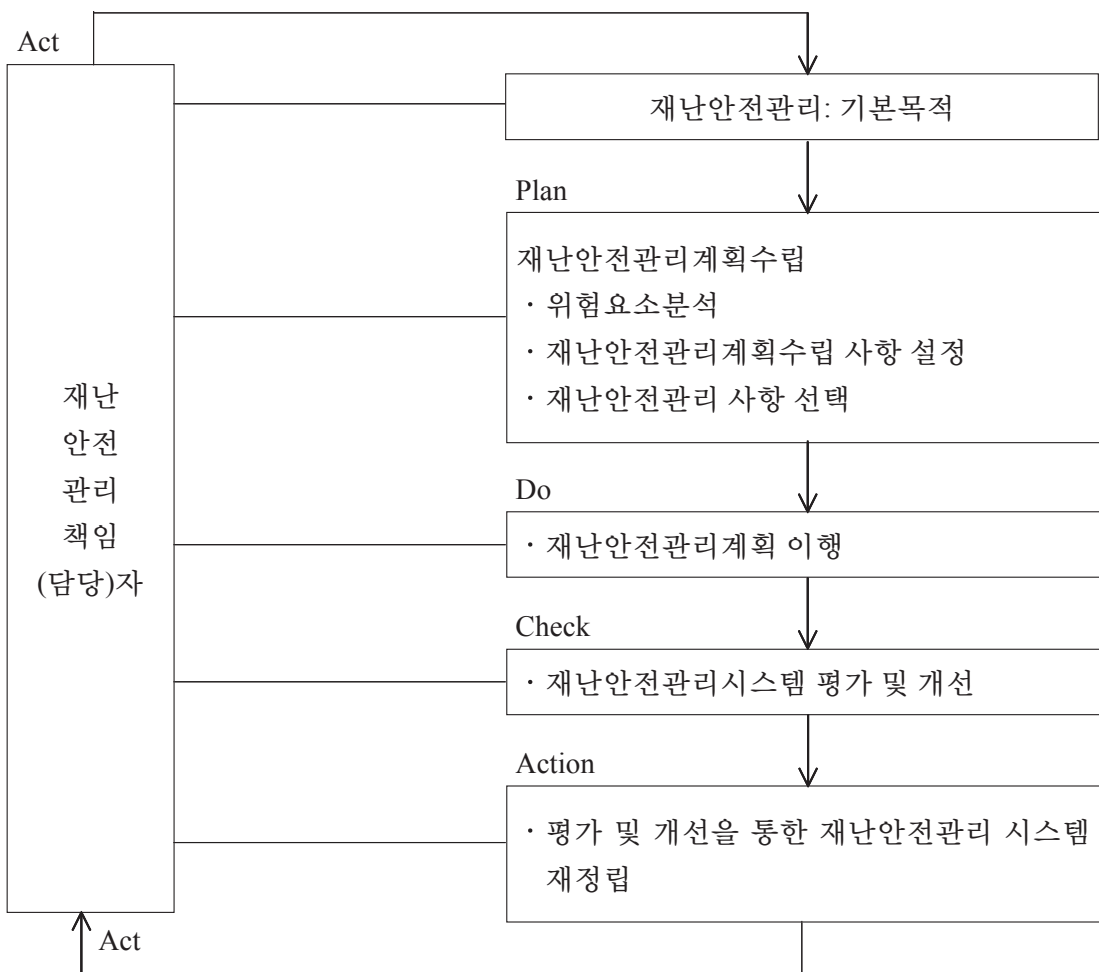
22) 위기관리체제의 구조적 속성으로 통합성·유기성·협력성·학습성이 있다고 한다. 이채연,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제4권제1호, 2012, P.24

23) 安城市·市民生活部防災危機管理課, ‘安城市危機管理指針’, 2013. 2., P. 4-7. 한편 佐々木는 위기관리는 행정의 위기관리 활동내용에 따라 저해대책(Mitigation), 사전준비(Preparedness), 응답성(Response), 복구성(Recovery)의 4단계모델과 위기관리를 위한 행정의 13가지 기능 모델로 구분되는 2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고 있다. 佐々木, “앞의 논문”, P.119참고

24) PDCA사이클은 미국의 통계학자인 에드워드 W. 데밍에 의해 구축된 품질개선 및 성과관리방법으로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매니지먼트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http://blog.naver.com/ssacstat?Redirect=Log&logNo=220498105371>>, 및 일본 전자용어사전 <<https://kotobank.jp/word/PDCA>> 참고 (2016.10.22. 최종방문)

분석하는 것, ② 이를 바탕으로 위기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Plan), ③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는 것(Do), ④ 위기대응 결과를 재평가하여 보완하는 것(Check), ⑤ 학습을 통해 2차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Ac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위기관리 프로세스 및 PDCA 상 재난안전관리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관리담당자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목적과 이를 위한 계획수립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에 관해서 법에서는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목적을 재난으로부터의 국토보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로 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제4조)하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재난원인 조사(제69조) 및 재난상황 기록 관리(제70조)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 프로세스 중 Plan에 해당하는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법에서는 국가의 재난과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제22조~제25조). 이와 같은 계획은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활동계획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셋째,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o는 법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제25조의2~제59조)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재난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Do로서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사전대책-긴급대책-복구대책의 체계로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전대책으로서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조치, 7.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등 재난예방조치를 하고 있다(제25조의2). 이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등 재난대비에 관한 사항(제34조~제35조)을 Do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긴급대책으로서 응급조치와 긴급구조로 세분화하고, 응급조치로서 ‘재난사태 선포’,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동원·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제36조~제43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목적, 계획과 연관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그리고 재정 등 복구대책을 두고 있다(제59조~제66조). 이러한 세부적 사항은 재난안전관리 이행의 책임범위와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넷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평가 및 개선으로서 Check는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목적 달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 긴급구조활동 평가(제53조)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제55조의2)라 하겠다.

다섯째, 학습을 통해 2차적 재난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Action으로서 대국민 안전교육(제66조의2)을 하는 것과 재난원인 조사(제69조) 및 재난상황 기록 관리(제70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기본법의 범규내용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프로세스 및 PDCA가 직접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재난 위험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과정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접근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술의 프로세스가 재난안전관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양자의 관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에 대해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관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위기관리와 재난안전관리는 그 지향하는 목적에 있어 위험예방 및 최소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관리의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위기관리는 그 개념에서 재해, 우발적 사고, 사회적·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난국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재난안전관리는 위기관리 중 재난이라는 위험요소 관리와 그 위험요소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기관리는 재난안전관리를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는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위험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관리로서 재난안전관리 또는 재난안전관리가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접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 지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제 1 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관리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법률적으로 최상위 규정임과 동시에,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재난안전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을 통해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행하는 지 파악할 수 있다. 법률에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이 되는 사항²⁵⁾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과, 재난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재난관리를 사전적 단계와 사후적 단계인 2단계 구조를 세분화하여 4단계구조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이 절에서는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재난안전관리 조직과 재난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법률상 재난안전관리 조직

(1)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안전관리의 책임과 의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다. 주체의 의무로서 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②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③ 발생한 피해를 신

25) 재난관련 법령의 법리로써 사전예방원칙, 전문성제고원칙, 교육과 홍보원칙, 행정지원원칙, 신속성원칙, 근거리행정원칙, 훈련과 보상원칙이 있다고 한다. 문현철, “앞의 논문”, P.74

26) 재난안전관리 조직을 행정조직법으로 계획과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행정작용법으로 구분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는 분석방법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문현철, “앞의 논문”, P.83-94 참고

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수립·시행이 있다(제4조제1항). 여기서 재난위험으로부터 생명·재산보호 그리고 재난위험의 예방과 최소화라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목적과 부합된 사항이 상술한 ①과 ②이다. ③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이행 방법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위해 법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9조 및 제11조).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알 수 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국가레벨에서 정해야 할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제9조제1항제1호)과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같은 항 제4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조정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정책과 연관된 사항, 예를 들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 심의, 국가기반시설 지정사항 심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의 기능만 보았을 때 심의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정책이나 부처 간 업무사항을 확정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레벨(시·도)과 기초레벨(시·군·구)로 나누어 각각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광역레벨과 지역레벨의 안전관리위원회는 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② 안전관리계획, ③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사항, ④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사전적·사후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제11조). 또한 이와 같은 지역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레벨에 맞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12조의2).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오늘에 있어 행정기관 중심의 정책수립·이행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능력, 경험을 최대한 반영한 기능을 행정영역에 반영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이라 하겠다. 즉 민과 관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수립과 이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 더욱 필요하며, 민관협력에 의한 재난위험 예방과 최소화에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러한 행정영역에의 참여, 실질적 효과 증대를 법에서는 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어 중앙과 지역에 각각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²⁷⁾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민관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②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③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④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

27) 중앙과 지역에 설치되는 안전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스 제공에 관해 협의(제12조의3 제1항)를 통해 재난 복원력을 높이고 있다.

(3)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재난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것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 조치야말로 제2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기도 하다.

이것을 반영하여 우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환언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지역에서의 재난수습을 종합적·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은 광역과 기초레벨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술한 지역위원회와 같이 2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을 중앙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14조제3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제60조·제61조).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광역레벨과 기초레벨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²⁸⁾. 재난 위협의 대응조치에 있어 양자간의 차이는 없다. 즉 행정구역 상 해당 관할 구역에서의 신속한 재난수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권과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요청, 그리고 인적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²⁹⁾

28) 이에 관해 자세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 참고

29) 이에 관해 자세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참고

(4)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 및 위험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다를 수 있으나, 자연재난의 경우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³⁰⁾ 이와 관련해서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2항·제3항). 또한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하며,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5)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구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고, 이를 총괄적 지휘체계 하에서 체계적으로 긴급구조활동을 목적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국가적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중앙과 지역별 긴급구조의 총괄 및 조정으로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또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은 광역과 기초의 재난 긴급조치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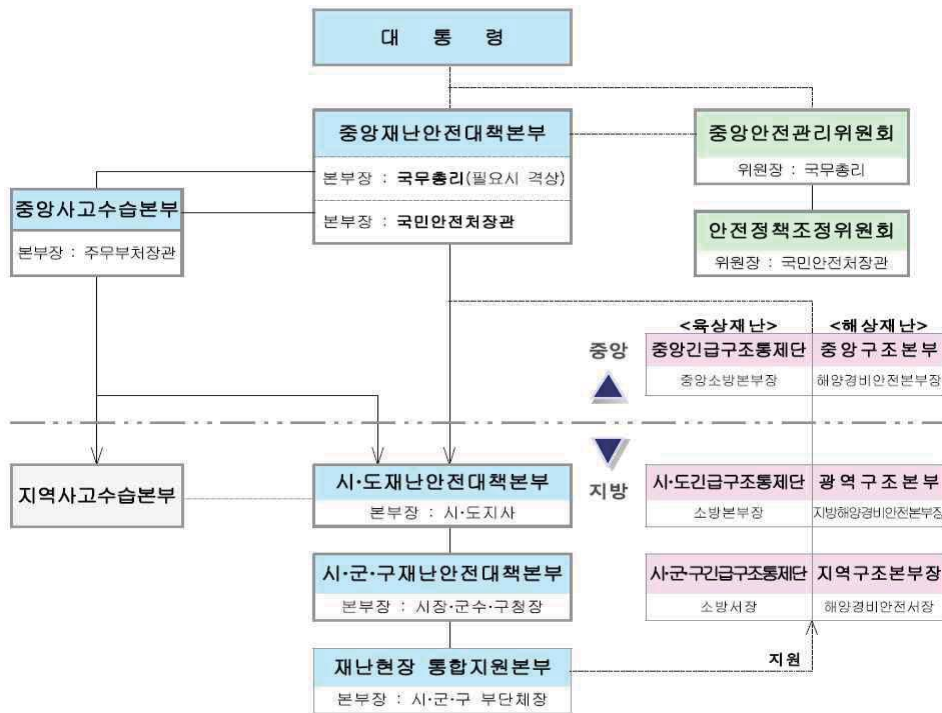
30)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2 참고

지역대책본부장은 각 급 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각급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를 연락관으로 파견하여야 한다(제52조제9항).

또한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제50조제3항).

이상으로 법률상 재난안전관리의 조직과 간략하나마 그 주요 업무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체계로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2> 재난안전관리체계



출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203

여기서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에서 재난 위험수위에 따라 크게 국가적 차원과 지방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의 체계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난 위험으로부터의 대응, 복구조치는 1차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선결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차원을 광역과 기초 레벨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통합적 운영체계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³¹⁾ 다만, 재난 위험발생은 아주 국지적인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역레벨에서 자유롭게 해당 지역의 재난 위험도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법률상 재난관리 방법

(1) 재난 예방대책

재난 예방대책은 크게 재난예방조치, 안전점검, 재난관리 실태공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재난예방조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그 조치사항을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대응 조직 구성과 정비, 정보체계 구축, 교육·훈련·예방홍보, 그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규정 제정이 있다(제25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31) 이와 반대로 임상규·최우정·곽창재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대응매뉴얼의 작성기준,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로서 재난책임기관의 분산을 예로 들면서 통합적·협력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상규·최우정·곽창재, “재난대응활동계획 기반의 협력적 재난대응체계 연구”,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P.28-30

둘째, 시설관리 사항이다. 여기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반시설과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재난위험지역이 있다(제25조의2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26조·제27조). 이러한 시설 및 지역의 관리방법으로 지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 점유자의 이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시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데 있다.

셋째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인력을 사전에 준비해 두는 사항이다(제25조의2 제1항 제7의2호). 이것은 재난 대비책과 연관된 사항이기도 하나, 재난 예방대책으로서 재난 예방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27조제3항)와,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30조제1항),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32조제1항)로 대별된다. 재난안전관리기관의 실태점검을 제외하고는 재난 취약성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지만, 안전점검을 통해 상시적·지속적 재난 예방 체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재난관리실태 공시이다. 이 공시제도는 1차적 재난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및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30조의3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재난 예방대책으로서 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각종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징후감시, 재해위험지구관리, 피해저감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정보시스템개선, 시설물비상대처계획 등의 사항을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다.³²⁾

32)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197

(2) 재난 대비대책

재난 대비대책에는 재난관리자원 비축,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 및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등 여러 가지 대책사항이 있으나,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대비 훈련을 들 수 있다.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매뉴얼, 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매뉴얼의 3가지가 있다. 표준매뉴얼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관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재난 대상을 국가적 차원의 재난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내용으로 한다(제34조의5 제1항제1호). 둘째로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그 성격상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장과 관계 기관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제2호). 마지막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및 절차를 정한 문서로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장이 지정한 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제3호). 이것은 현장 지휘권자에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행동사항 및 절차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즉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인 재난대비 훈련은 재난안전관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수시 재난대비 활동을 하게함으로써 재난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보완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유사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이에 첨가하여 국가안전기본계획에서는 재난정보·상황관리체계 확립, 자원동원계획 및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시행, 유관기관과의 긴급지원체계 구축,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교육훈련, 국민 행동요령 홍보, 응급대응체계 및 비상연락근무체계 정비, 지자체 및 관련 행정

기관의 대비대책 조정 및 지원,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등을 재난 대비대책의 주요 항목으로 하고 있다.³³⁾

(2) 재난 대응대책

재난 대응³⁴⁾대책은 응급조치와 긴급구조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재난 대응 절차에 따라 ① 재난사태선포 → ② 대피명령 → ③ 위험구역 설정 → ④ 통행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① 현장지휘 → ② 긴급구조활동 평가 → ③ 재난대비 능력 보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 대응대책은 상술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대응매뉴얼의 실질적 이행과 관련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재난 대응대책에 필요한 항목으로서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초기대응체제 확립, 이재민 대책 및 대책본부 구성·운영, 2차 재난방지대책, 긴급수송대책, 구조구급 의료대책, 청소·방역 대책,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시설물 응급복구계획,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공급 등을 국가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³⁵⁾

(4) 재난 복구대책

재난 복구³⁶⁾대책은 재난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피해배상(보상), 자원봉사단 활용, 항구적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피해조사, 재난복구비용

33)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197

34) 재난대응의 개념을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업무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과 제2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복구단계에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양기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지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론적 관점”, 사회과학연구 제34권제3호, 2008., P.84

35)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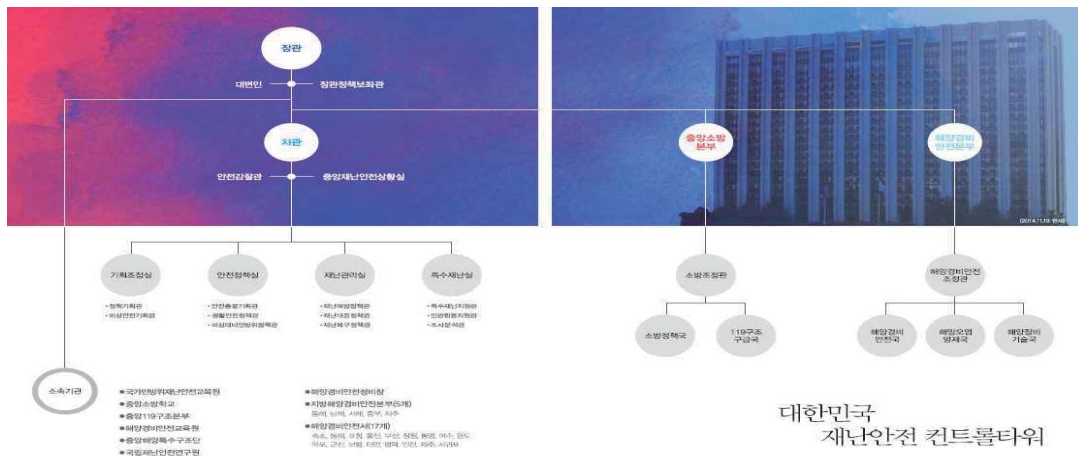
36) 재난복구는 “재난발생으로부터 피해지역의 원상회복되는 과정이며, 초기회복기간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정상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라 한다. 양기근, “앞의 논문”, P.84

지원대책(대상, 기준, 비용산정, 지원절차) 등³⁷⁾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⁸⁾

제 2 절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³⁹⁾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⁴⁰⁾

<그림 3> 국민안전처 조직도



출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history/>>
(2016.9.26. 최종방문)

37)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197

38) 재난 복구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66조 참고

39)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history/>>,
(2016. 9. 26. 최종방문)

40)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history/>>,
(2016. 9. 26. 최종방문)

이와 같은 설립목적에의 구체화 및 체계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는 1차 관 산하에 5실 2본부로 구성되며,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중앙소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등을 담당한다(제10조).

둘째, 안전정책실은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등을 담당한다(제12조).

셋째, 재난관리실은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제13조).

넷째, 특수재난실은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 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사고, 정보통신 사고 등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한다(제14조).

<표1>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 내용

관련 부서명	주요 업무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관련 부서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 방재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처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명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훈련에 관한 사항 ○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특수재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 등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의 운영 ○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 화산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 지진·화산 피해조사 ○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undefined>>
(2016.9.26. 최종방문)

이상과 같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면 재난안전법상의 구성 체계 및 역할 수행기관의 업무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에서 재난 안전관리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운영 및 재난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국민 안전처의 담당부서 업무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가 단순히 법규상의 근거로 작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난 위험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에 적극행정 개입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가 현재 어느 정도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가를 광역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선정 방법으로서 국민안전처가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재난관리 우수기관·미흡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⁴¹⁾ 이것은 대상선정의 객관성과 분석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조사·분석하여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위기 대응·복구 과정 등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재난안전관리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자

41) 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위험 예방 및 최소화에 대비한 단계별 과정, 조직구성 및 정비 실태, 안전관리체계 등을 개인역량, 부서역량, 네트워크역량, 기관역량의 주요 점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것이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2016.3., <www.open.go.kr>참고 (2016. 8.25. 최종방문)

메일·유선전기통신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담당과는 이하와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부서 일람

지역 및 관리기관		담당과
시 도	경 남	재난대응과
	울 산	재난관리과
	충 북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과
시 군	전남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경기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기획팀
	경남 양산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경기 남양주시	행정안전국 안전기획과
	경남 함안군	안전총괄과
	경기 용인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충북 충주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자치구	서울 은평구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재난안전팀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대전 서구	재난안전담당관
	부산 금정구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광역	서울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부산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전북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또한 인터뷰 사항으로서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2. 재난안전관리 업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6.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대항목을 설정하고 각각의 세부항목을 정하였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재난안전관리 인터뷰 내용

구분	세부항목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재난안전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분	세부항목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	-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율의견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율의견

1.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6곳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경남, 울산, 충북, 서울, 부산, 전북 등 6곳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였다(부록 참조). 검토한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전관리 자문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 기금 운영·관리조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치법규를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 현황

구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안전관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각 호 사항의 심의·	각 호 사무를 관장		×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구 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리 위 원 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사무 수행	조정				
		관계기관 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관계기관 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관계기관 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관계기관 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등의 기능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등의 기능	설치 및 구성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충청북도 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전라북도 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구 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자문, 안전점검 요청의 방법	자문, 안전점검 요청의 방법	자문, 안전점검 요청의 방법	×	자문, 안전점검 요청의 방법	자문, 안전점검 요청의 방법
	자료 요구 및 협조의무	자료 요구 및 협조의무	자료 요구 및 협조의무	×	자료 요구 및 협조의무	자료 요구 및 협조의무
재난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기금의 용도 (총 제2호 제8목)	기금의 용도 (총 제15호)	기금의 용도 (별표)	재난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용도 (총 제2호 8목)	재난관리 기금조례
				기금의 용도 (총 제9호 제20목)		기금의 용도 (총 제17호 15목)
재난안전 대책본부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대책본부의 설치, 기능, 운영체계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 운영, 기능	대책본부의 설치 · 운영기간, 기능	대책본부의 설치, 기능, 운영체계
	대책본부 회의	대책본부 회의 구성, 운영	대책본부 회의 구성, 운영, 소집 등	대책본부 회의	×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 운영, 소집 등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활용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구 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재난상황의 보고 (시기, 방법, 서식)	재난상황의 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요령 (시기, 방법, 서식)	재난상황의 보고 요령 (시기, 방법, 서식)	재난상황의 보고 및 공동대응

이것은 상술한 “2015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울산, 충북, 서울, 부산, 전북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상기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광역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살펴본 것을 보면, 경남, 울산, 충북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기구 각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3개 시·도 공통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술한 3개 시·도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표 5> 경남, 울산, 충북의 재난안전관리 조례 제정 비교

구 분	경남	울산	충북
안전관리위원회	○	○	○
안전관리자문단	○	○	○
재난관리기금	○	○	○
재난안전대책본부	○	○	○
기 타	-	-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기구들은 재난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충북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경우,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표 6>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기구 관련 주요 법조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4 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삭 제>
-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

용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undefined>>
 (2016. 9. 26. 최종방문)

서울, 부산, 전북은 앞서 살펴본 경남, 울산, 충북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개별적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경남, 울산, 충북의 사례와는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등으로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가 서울, 전북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부산의 경우에는 경남, 울산, 충북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각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었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술한 3개 시·도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서울, 부산, 전북의 재난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 비교

구분	서울	부산	전북
안전관리위원회	△	○	△

구분	서울	부산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	○	○
재난관리기금	○	○	○
재난안전대책본부	△	○	△
기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주: 서울, 전북의 △ 표시는 개별적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해당 기구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서울과 전북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데, 개별적인 기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본조례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8> 서울, 전북의 안전관리기구 관련 주요 내용

<p>「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p> <p>제 6 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3조(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책본부를 둔다.</p>
--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의 다른 실·본부·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 6 조(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기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32조(도 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도 대책본부를 둔다.

출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⁴²⁾

이상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 9. 26. 최종방문)

첫 번째로,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⁴³⁾,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도 안전관리위원회’는 크게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의 심의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반면, 울산광역시는 심의·조정 업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통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관련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 관계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기는 하나, 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 및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두고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자문 및 안전점검의 방법 등, 의견청취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이 자문에 응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의 조례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43) 경상남도 및 충청북도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사무의 범위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명이 통일되어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각각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충청북도는 별표로 규정하면서 세밀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해당 조문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만 통제관 및 담당관을 각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및 재난대응과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및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각각 수습을 주관하는 본청 실, 국, 본부의 장 등⁴⁴⁾ 및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및 충청북도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 실무반원이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 상황실로 응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재난상황의 보고 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보고시기와 보고방법, 보고서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난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대강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에서 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을

44)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통제관은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민관이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상술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실무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다만, 울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4곳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상남도

경남의 재난안전관리조직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산하 안전정책과와 재난대응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는 업무별로 각각 총괄하나, 제1부서는 재난안전정책과가 총괄을 맡고 있다. 재난안전정책과는 안전기획담당, 안전문화담당, 안전점검담당, 비상대비담당, 특별사법경찰담당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조직의 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안전정책과 내에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점검, 비상대비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획담당은 안전, 재난관리정책을 총괄하고, 안전문화담당은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 기획을 담당한다. 그리고 안전점검담당은 안전관리 지도 등을 각각 맡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은 홍보방송, 홈페이지 게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팸플릿을 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은 어려웠다.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시 설치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과 관련해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②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사회재난은 재난관리과,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여 각 분야별로는 총괄부서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정책팀, 안전문화팀, 비상대비민방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안전관리계획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은 안전정책팀과 안전문화팀이, 그리고 민방위 훈련 등 경보통제 업무는 비상대비민방위팀에서 담당하도록 나뉘어져 있다.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버스광고, TV 자막, 팸플릿 배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자율방재단-등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모니터봉사단’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 훈련과 관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민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난발생 시 자연재난 복구팀이 구성되어 대응·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비상연락망이 항상 구축되어 있고, 경찰, 소방 등과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있었다. 각 기관별로는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소방은 구조, 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 방재안전과 관련된 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많이 충원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시민안전실에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원자력 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특별사법경찰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 관리는 시민안전실 내에서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총괄부서에는 총 129명의 직원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난안전관리 조직이 설치 및 구성되어 있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재난부분-자연재난, 천재 지변-은 시민안전실 내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방부분이나 민간인 안전 사고는 재난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사회재난은 상황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으로는 재난대응 빅보드 사업-전체 CCTV 파악-을 통해 침수지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홍보사업을 개발 중에 있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예방업무의 경우에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예방 등 안전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때 교육 또는 안전점검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재난발생 시 재난규모가 심각한 4단계 정도가 되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협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이 훈련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것과 같이 평상시에도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의 한계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매뉴얼, 주요 재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④ 전라북도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생활안전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는 각 부서별로 움직

이기 때문에 총괄의 의미가 없고,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한다는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각 부서별 인적구성은 안전정책과(22명), 사회재난과(11명), 자연재난과(16명), 생활안전과(14명)로 되어 있다. 이 조직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안전정책과-안전총괄팀, 재난정보팀, 비상대책민방위팀, 경보통제소팀-, 사회재난과-사회재난예방팀, 사회재난대응팀, 산업안전팀-, 자연재난과-자연재난예방팀, 자연복구지원팀, 재난상황실팀-, 생활안전과-생활안전관리팀, 안전교육문화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로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는 각 부서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재난발생 시에는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분야별로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부서별로 다르며,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11곳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11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상선정 기준과 같이 국민안전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11곳에는 시·군으로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7곳과 자치구로서 서울 은평구·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4곳을 대상으로 자치법규를 검토하였다(부록 참조).

검토한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관리 자문단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재난관리 기금 운영·관리 조례」와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조례」,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조례」 및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치법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 밖에도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9>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 현황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사무 관장 사항	○	안전 관리 등 심의 위원회 조례	○	○	○	○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	○ (심의· 의결)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의무	○	위원회 의 기능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	○	○	○	○	기능, 구성 ×	기능, 구성 ○	○	○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문의 주체	광양 시장	×	양산 시장	남양주 시장	군수	용인 시장	충주 시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금정 구청장
	자문 및 안전 점검 방법	○		○	○	○	○	○	○	○	○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요구	○		○	○	○	○	○	○	○	○	○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기금의 용도	총 제2호 제7목	총 제8호	별표	총 제6호 21목	총 제5호	총 제7호 제20목	별표	×	총 제9호	영 제74조 각 호	총 제5호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 등	상황 판단/ 대책 본부 회의	상황 판단 회의	상황 판단 회의	상황 판단 회의	상황 판단 회의	상황 판단/ 대책 본부/ 실무 회의	상황 판단/ 대책 본부/ 실무 회의	안전 대책 관계 관회의	대책 본부 회의	상황 판단/ 대책 본부/ 실무 회의	상황 판단 회의
	매뉴얼 활용 여부	위기 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⁴⁵⁾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위기 관리 매뉴얼 활용	위기 관리 매뉴얼 활용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의 작성, 운용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의 작성, 운용	위기 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45) 매뉴얼상의 통합지원, 자원동원체계, 재난상황 전파체계, 단계별 상황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현황과 내용

		전남 광양시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서울 은평구	서울 성동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재난 상황의 보고	○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보고 시기, 방법, 서식	○	○	보고 시기, 방법	보고 시기, 방법, 서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설치·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기타 조례							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재난 예방 및 안전 문화 봉사 활동 사회 단체 지원 조례		

상기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11곳의 재난안전관리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혹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포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파주, 은평구, 성동구-의 경우에는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수의 기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 주요사항
비교(1)

구분	광 양	파 주	양 산	남양주	함 안	용 인
안전관리위원회	○	△ ²	○	○	○	○
안전관리자문단	○	△ ²	○	○	○	○
재난관리기금	○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	○	○	○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¹	○	○	○	-	○	○

주: 1)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포함한다.

2) 경기도 파주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규정이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다.

<표 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 주요사항
비교(2)

구 분	충 주	은평구	성동구	서 구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	△ ²	△ ³	○	○
안전관리자문단	○	△ ²	△ ³	○	○
재난관리기금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	△ ²	△ ³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휘소)	○	○	-	○	○
기타	○ ¹	○ ²	○ ³	○ ⁴	-

- 주: 1) 충북 충주시는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4) 대전광역시 서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겠다.

<표 12>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법조항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undefined>
 (2016. 9. 26. 최종방문)

충청북도 충주시와 대전광역시 서구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목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표 13> 충청북도 충주시·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관련 자치법규 주요내용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 「자

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 9. 26. 최종방문)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시에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문·사전재해·재난관리기금·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시 은평구와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두고 있으며, 각 조례에서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은평구와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 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영 제74조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⁴⁶⁾하고 있으나, 이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는 달리 경상남도 양산시와 충청북도 충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해 ‘별표’를 통해 규정⁴⁷⁾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용도를 명시하고 있다.

네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본부의 회의 내용 및 매뉴얼 활용 여부, 재난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회의의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함안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상황판단회의만을 하는 반면, 전라남도 광양시에서는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실무회의까지 운영하여 총 3가지의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에는 ‘안전대책관계관회의’라고 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특색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매뉴얼 활용여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광양시, 경기도 용인시,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현장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47) 충주시 및 양산시의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해 자세히는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별표 서식1 및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별표 참고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뉴얼의 활용 없이 조례에서 통합지원, 자원동원체계, 재난상황 전파체계, 단계별 상황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재난상황의 보고 규정과 관련해서도 전라남도 광양시,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조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시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충청북도 충주시와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각각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의 체계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실무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와 같다.

① 전라남도 광양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기획, 자연재난, 사회재난, 통합관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는 안전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총괄부서는 마찬가지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관리 조례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기획팀은 안전기획, 안전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재난팀은 사회재난 업무 전반을, 자연재난팀은 자연재난 업무 및 급경사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합관제팀은 CCTV 등 통합관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는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는 1년에 한번 위험도를 평가하고, 매년 4월마다 재난 공시를 하고 있다.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은 안전문화운동과 위험시설 개선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제1, 2위험지역과 급경사지구 등을 지정·관리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여기에 시비예산을 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장이 부서별로 투입되어 대응·복구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장, 구청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이에 책임참여기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 2014년도부터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경기도 파주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기획팀, 안전협력팀, 안전대책팀, 방재시설팀, 민방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 안전관리 조직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팀별로 각각 수행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안전기획팀은 안전기획업무 총괄, 안전협력팀은 안전협력업무 및 시설물 관리 등, 안전대책팀은 자연재해 등 위험지구 관리, 방재시설팀은 방재시설물 관리 등, 민방위팀은 민방위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보도자료, 홈페이지, 시보, 시정소식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청소년, 어린이, 노인) 또는 자체적으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은 시보에 매년 전년도 우려지역을 공표하고, 안전교육훈련은 민방위훈련과 별개로 가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사전에 합동점검 등을 같이 하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방재전문직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문직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방기관이 소속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방기관이 소속되지 않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광역처럼 소방기관이 소속될 수 있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경상남도 양산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를 두고 있으며, 이과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총괄과는 세부적으로 안전기획, 안전관리, 자연재해, 민방위,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었다.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와 관련하여, 매달 월별로 주요재난사고-8월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산불-에 대해서 과에서 주제별로 사고예방방법 등을 홈페이지, 시의 SNS, 신문, 시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옥외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와 관련하여 위기상황별로 매뉴얼이 갖춰져 있으며, 실제 상황 시에 이용할 수 있게 미리 관리하고 공표한 이후에 대처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시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고, 관련 재난안전부서들이 공동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별로 업무내용이 다르고, 재난현장에서는 재난현장통합 지휘소가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적인 부분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안전총괄과 인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관리차원에서 인력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는 안전총괄부서의 업무부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소관부처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안이 있어 이런 사안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④ 경기도 남양주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행정안전국 안에 안전기획과가 있으며 그 밖에는 분야별로 각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안전관리는

안전기획과에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기획과에 안전기획팀, 예방안전팀,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장과 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안전기획, 예방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업무분장으로서 안전기획팀은 지역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예방안전팀은 건축물 유지 관리 등, 자연재난팀은 우수지 관리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회재난팀은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한국훈련 등 담당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매달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또는 안전지킴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안전점검활동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과 관련하여 주민, 전문가를 선정하여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교육을 하고, 안전전문강사를 모집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발생 시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후에 안전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또한 주관부서에서 대응하되,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대응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부서별로 맡은 업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부서로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연계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필요할 것이나, 재난발생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경상남도 함안군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도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등 담당부서별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업무 수행하고 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4명), 민방위(3명), 복구지원(4명), 하천관리(3명), 낙동강관리(4명) 업무로 나누어져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 분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복구계획 수립을, 민방위 분야는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복구지원은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감독을, 하천관리는 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하천통계 관리를, 낙동강관리는 유지, 관리사업 시행, 소하천 시설 복구사업(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수시로 전단지,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장회의를 거쳐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은 캠페인을 통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발생 훈련은 민방위훈련이나 읍지연습 시에 재난안전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비상연락망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역할은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 경기도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총괄과가 다음의 각 팀을 총괄하고 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5명), 재난관리팀(5명), 복구지원팀(3명), 민방위팀(3명), 안전점검팀(3명), 안전기동팀(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안전총괄팀(용인시 자율방재단,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 등), 재난관리팀(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관리), 복구지원팀(자연재해관리, 재해예방 대책사업 관리), 민방위팀(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장비관리), 안전점검팀(안전신문고 추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기동팀(시기별 안전 점검 업무)로 각각 구분되어 있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홍보물, 홈페이지, 팸플릿, 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안전도평가를 1년에 1번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은 사회취약계층을 방문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발생 훈련의 경우, 풍수해대비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시 안전총괄과에서 분야별로 통제하고 있는데, 대응·복구는 분야별로 다르나 예를 들면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중장비 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사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는 소방기관 등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⑦ 충청북도 충주시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두고, 이과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한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팀(4명), 안전재난관리팀(7명), 자연재난팀(3명), 비상대비민방위팀(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언론홍보, 전광판, 시내버스 외벽,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는 시설물-교량, 옹벽,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매달 1회 캠페인 실시,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보완 및 홍보, 지도를 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과 관련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공표가 되며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며,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었다.

유관기관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안전관련 봉사단체, 공군, 군부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고 있으며 유사시 구조 활동, 대응, 복구 업무부터 최종 완료까지 연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방안으로 재난안전관리와 이에 대한 총괄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건설안전교통국에 안전치수과가 있으며, 재난안전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안전팀(7명), 하수팀(6명), 하천관리팀(6명), 지하수기전팀(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단체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 교육은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단체인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

재난훈련은 매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과가 총괄하고 있다. 안전관리과는 도시안전팀(7명), 보행환경개선팀(4명), 광고물관리팀(9명), 가로정비팀(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도시안전팀(재난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행환경개선팀(통합배포대 총괄, 손실보상), 광고물관리팀(불법 광고물 정비, 재난의 수습, 복시 지원계획), 가로정비팀(가로환경정비)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1달에 한 번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안전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안전관리과에서 복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관기관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업무분장은 안전관리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⑩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부구청장 산하에 재난안전담당관이 있으며,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는 안전정책(6명), 사회재난(1명), 민방위(2명), 재난복구(7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그 설치근거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는 담당업무를 나누어서 재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 홈페이지, 구정 방송,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 교육은 소방서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재난 훈련은 1년에 4번 기본 훈련과 수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관기관과의 재난안전관리는 합동점검, 훈련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는 도시안전과장과 안전관리팀(8명), 재해예방팀(4명), 민방위팀(4명), 도로정비팀(7명), 기전팀(5명), 광고물팀(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는 안전관리팀(재난안전 및 대책본부 운영, CCTV 설치공사), 재해예방팀(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민방위팀(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도로정비팀(도로보수, 가로정비 차량운행), 기전팀(도로조명 사업계획), 광고물팀(광고물 관리)으로 나뉘어져 있다.

재난안전관리 홍보는 자연재난의 경우에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침수예상 지역에 방송, 전광판,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단, 통장 등에게 상황전달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본부를 구성한 후에 부서별로주관해서 -건축과는 건축물 담당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재난 예방·대비는 자연재난의 경우 경보 및 매뉴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은 매월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5~11월에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소

화기,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재난발생 우려 지역은 방송을 하거나 각 동에 알리고, 국민운동단체단 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었다. 이번 연도 훈련은 풍수해 대비운동, 방사능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호훈련 등을 하고, 연말에는 산불대비, 폭설대비 훈련을 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재난발생 시 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13개의 협업부서가 같이 구성되는데, 이와 더불어 시설응급복구를 위한 건설과, 복구과, 공원녹지과 등 5개 과가 더 추가되어 실제로 17개 과에서 협업이 이루어진다. 이 때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소관부서와 담당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관기관과는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상수도사업본사 등과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누출, 가스배관 담당,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부분 담당하는 등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의 순환보직 체제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난안전관리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 4 절 소 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 6곳,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 자치구 11곳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인식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 역량에 맞추어 조직구성, 조직 간 연계, 홍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의 조직을

구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행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에 역량을 집합시키고 있는 이유로서 우리사회, 작게는 지역사회의 안전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재난 위험이 과거에는 국지적·지역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오늘에는 광역적이고 피해 규모도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어 한층 더 재난안전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관심과 역량 집중화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사가 단편적인 측면과 조사항목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에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둔 보완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서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잘 되어 있으나, 총괄부서와 유관부서 간 또는 부서 내의 팀·반의 유기적·협력적 관계 형성의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

재난 위험이 발생하기 전, 즉 재난 예방과 대비 단계에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로 운영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부서 간에 어떠한 사안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인지, 혹은 현재 재난 예방 및 대비에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가 등등에 관해 부서 간 혹은 팀·반간에 상호 정보공유와 체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난안전관리의 중복은 물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재난 위험이 발생한 후 그 대응과 복구과정에 있어 혼선·혼란과도 연관된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의 조직구성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재난 안전관리 행정절차의 비효율성과, 나아가 재난 위험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재난안전관리 부서 간에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관리 부서 간 정보공유 시스템은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보공유 시스템구축 예산을 별도로 필요로 하며, 시스템 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구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현재 부서 간 또는 부서 내 팀·반간에 활용되고 있는 메신저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한 사람을 정보공유자로 지정하여 이 들이 주기적으로 다른 부서 또는 팀·반의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의 소속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정보공유 프로세스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확인하여 전체 관련부서에 공유하는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연계 사항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소방·경찰·도로·가스·전력 등 담당 기관-과 연계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관체제 내지는 상호 협력 체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복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하다고 하겠다.

다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재난안전관리에 유관기관과의 업무분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재난안전관리와 같이 재난 위험 유형의 다양성과 그 피해의 파급과 충격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전문기관의 상호 협력이 더욱더 필요하며, 면밀한 업무분장과 활동내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의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재난안전관리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경찰기관은 재난 위험 발생 지역의 대피 유도, 통행제한, 보안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소방기관은 응급구조와 긴급구조 활동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도로공사, 가스공사, 전력공사의 지사 또는 지역 사무소는 해당 지역의 재난으로 발생한 복구와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의료기관을 재난 안전관리 지원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가옥손실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경우, 협소한 장소와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 그리고 재난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보건의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나 자치구에도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나 단체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하여 재난 위험발생 후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형성도 필요하다.⁴⁸⁾

세 번째로서, 지역 재난안전관리 홍보,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재난대피요령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홍보, 교육 및 훈련을 계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은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재난발생 상황을 알려 전파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1차 행동을 하여야 하는 가, 그리고 2차적으로 대피 장소는 어디이며, 이웃 주민과의 행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 등등의 대피요령 사항을 어디서나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48) 재난방재행정을 주무부서, 유관기관, 민간의 협조와 공조에 의해 달성되는 통합 행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현철, “앞의 논문”, p.97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역 주민의 대피요령을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⁴⁹⁾

이것은 재난대피요령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피행동요령이나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면 매뉴얼과, 홍보, 교육 및 훈련은 무의미하다. 재난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피행동요령 및 관련 세부사항의 가시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총괄부서 또는 각 사안별 담당부서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부서 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⁵⁰⁾

이와 같은 시스템은 재난안전관리분야에 그치는 현상은 아니지만, 재난안전관리와 같이 재난의 특성, 발생유형의 다양성, 피해의 광범위성, 복구의 장기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제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현 시스템 하에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추가 인력을 선발하여야 하는 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재난안전관리의 전문성의 결여된 상태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⁵¹⁾

49)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참여미흡을 지적하는 견해로서 문현철, “앞의 논문”, P.96 참고

50) 재난안전관리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문현철은 재난부서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 이동, 기피부서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임상규는 재난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업무연속성계획기반의 조직학습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정극원은 군에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현철, “앞의 논문”, P.95, 임상규, “정부 3.0기반의 재난관리 3.0구축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6., P.220-221, 정극원, “재난대응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의 법적 방안”,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P.30 참고

51)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

원의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퇴호·권용수·김혜영,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제3호, 2014., P.399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⁵²⁾

제 1 절 대만의 재난안전관리⁵³⁾

1.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대만의 재난안전관리는 「災害防救法; Disaster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이하 이절에서 “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⁵⁴⁾ 이 법은 재해방지와 대응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국토보전에 목적을 두고 2000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⁵⁵⁾

이 법에서는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앙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으로서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원에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심의회(中央災害防救會報; Central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Council)와 그 산하에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관기관의 이원적 체제를 두고 있다.

52) 일본과 대만 이외에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논문으로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초기대응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미국의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서술하고 있는 강인호,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와 시사점”,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 P.92-94, 독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법체계 및 연방과 주정부의 재난관리를 서술하고 있는 임종현, “독일의 재난관리 시스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제1호, 2016.3., P.150이하, 그 밖에 우리와 독일의 재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우리의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제언하고 있는 최미옥,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제2호, 2010.6. P.125-136 참고 등이 있다.

53) 대만의 재난안전관리는 대만의 수해방지구조업무계획을 참고하여 번역·정리한 것이다.

54) 災害防救法(Disaster Prevention and Protection Act)의 제정배경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李建中·李至倫(著), 尹龍澤·劉繼生(譯), “台灣における防災政策の現状と課題”, 創価法学 第37卷2号, 2005. P.134-136 참고

55) 災害防救法の 본문은 다음을 참고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심의회는 ① 재해방지 및 대응 기본방침 마련, ② 재해방지와 대응 관련 정책수립 및 대응 조치사항 심사·결정, ③ 전국 규모의 긴급재해 대응조치 업무를 담당한다.⁵⁶⁾ 그리고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관기관에는 재해유형에 따라 행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즉 풍해, 지진재해, 화재, 폭발재해는 내정부가 담당하며, 수해, 가뭄피해, 공공이용 천연가스 및 유류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로 재해, 광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부에서 담당한다.(제3조 제1항 1호·2호)

그리고 한파로 인한 피해, 토석류 피해, 산림화재는 행정부 농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사고, 해난사고, 육상교통사고는 교통부가 담당한다. 그 밖의 독성화학물질과 관련한 재해는 행정원 환경보호서가, 생물병원재해(生物病原災害)는 위생복지부가, 방사능재해는 행정원 원자력위원회가 담당한다.(제3조 제1항 3-7호)⁵⁷⁾

이와 관련하여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관기관인 각 부처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권한으로는 첫째로서, 직할시·현(市)⁵⁸⁾과 공공사업 시행기관의 재해방지 및 대응사업 지휘·감독, 둘째로서, 재해 방지 및 대응 업무계획 결정과 수정 입안 및 집행을 가지고 있다.

56) 行政院中央災害防救會報

<<http://www.cdprc.ey.gov.tw/cp.aspx?n=A90D0BC92F9A1D47>>, (2016.10.16. 최종방문)

57)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58) 대만의 행정구역은 현재 1개의 성(省)(대만성, 臺灣省), 6곳의 직할시(直轄市), 11곳의 현(縣), 3곳의 시(市), 146곳의 향(鄉), 38곳의 진(鎮), 14곳의 현할시(縣轄市), 170곳의 구(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향(鄉)은 촌(村)으로; 진(鎮)과 현할시(縣轄市)는 리(里)로; 촌(村)과 리(里)는 린(鄰)으로 분할되어 있다. 維基百科 홈페이지의 臺灣行政區劃

<<https://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8%A1%8C%E6%94%BF%E5%8D%80%E5%8A%83>>, (2016.10.16. 최종방문)

책임으로서는 재해방지 및 대응 사업 지원 및 처리, 재해범위가 해역에 이르거나 2이상의 직할시·현(시)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직할시·현(시)청이 대응할 수 없는 재난발생 지원 등이 있다(제3조 제2항)⁵⁹⁾. 또한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관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능으로서 재해방지 및 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행정 및 금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서, 지방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으로 광역레벨에 해당하는 직할시·현(시)에 설치되는 지역 재해방지 및 대응심의회와 기초레벨에 해당하는 향(진·시)에 설치되는 재해방지 및 대응심의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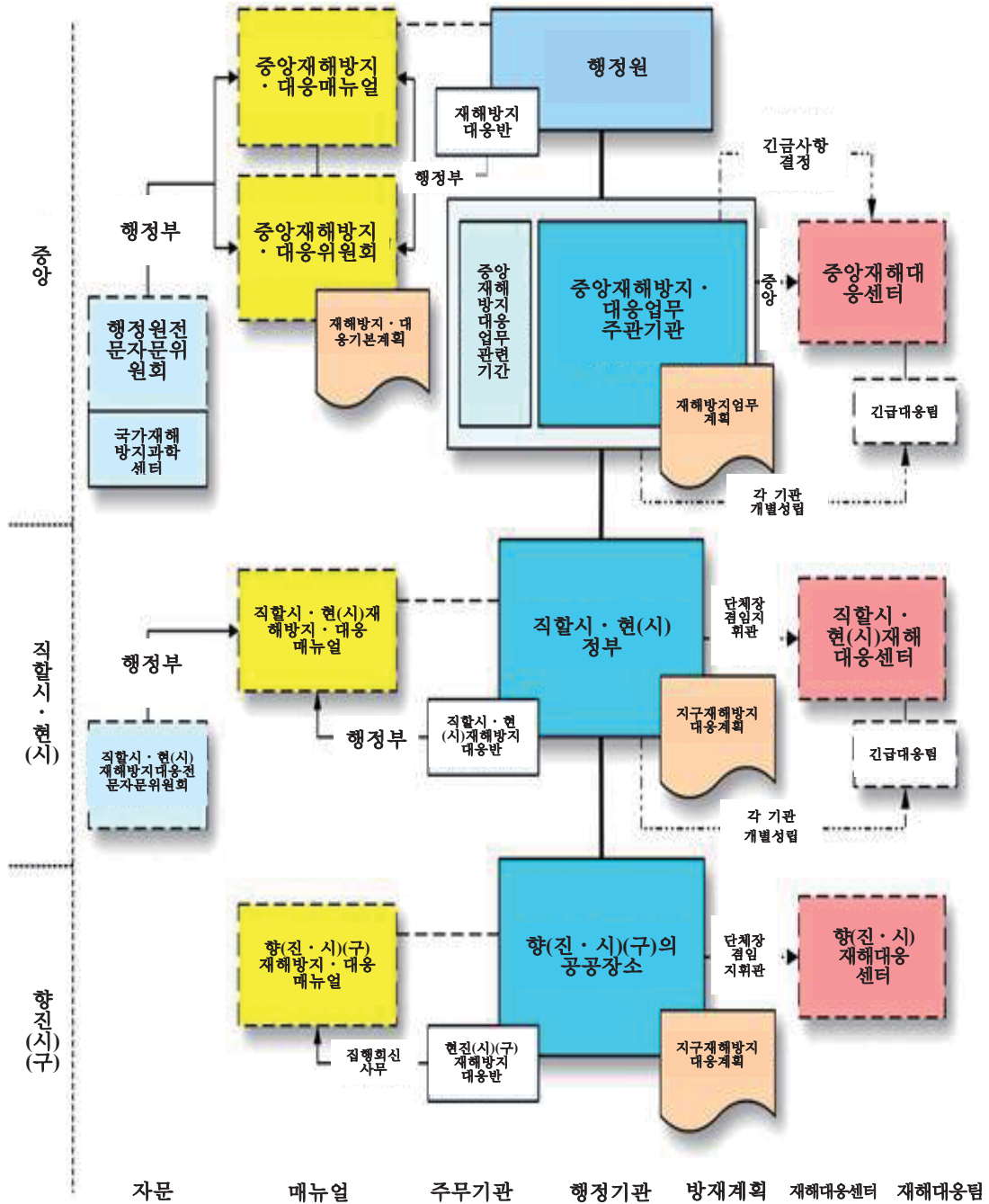
광역레벨의 심의회는 해당 지역의 지구별 재난방지 대책 및 대응계획 심사·결정, 직할지구내 긴급대응조치 심사·결정, 그리고 직할지구내 재해방지 및 대응 사항 감독을 위해 설치된다(제8조)⁶⁰⁾. 반면에 기초레벨의 심의회는 광역레벨 심의회의 역할 이외에 대피소의 적절한 배치·재난상황 통보·재난 발생 후 긴급통행로 확보·재난주변 환경정리 등 재난긴급대응 및 정비조치와 거주민지구 재해방지 및 대응사무를 담당(제10조)⁶¹⁾하는 특색이 있다.

59)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60)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61)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그림 4> 대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출처: 行政院中央災害防救會報

<<http://www.cdprc.gov.tw/cp.aspx?n=AB16E464A4CA3650&s=B7411BDCD003C9EC>>, (2016.10. 16. 최종방문)

2.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상술한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재난대응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27조)⁶²⁾. 이 재난대응 조치 사항에 관해 재난발생 전후, 재난발생 후로 나누면 아래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4>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조치사항

구분	재난대응 조치사항
재난발생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경보 선포·전달, 재난경계 - 소방·홍수예방, 그 밖의 대응사항 - 농업시설 등 대비사항 - 생활필수품 비축 - 재난대응 및 예방대책 확인
재난발생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분산, 피난권고, 구조 - 재난상황 수집 및 손실 조사·분석 - 경계지역구획설정, 교통통제관리,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 수재민 임시수용, 응급조치(아동·청소년·학생 돌봄 서비스) - 사회적 취약자 특수보호 조치 - 위험시설 및 설비 대응조치 - 전염병예방, 폐기물처리, 식품위생 검역 등 위생사항 - 수색구조, 긴급의료구호 및 수송 - 사망자 유품 처리 - 생활필수품 공급 및 배분 - 철도, 도로, 교량, 대중운송수단 긴급대응조치 - 도시가스 등 공공이용 파이프라인, 송전선, 상수도 등 공공시설 긴급대응조치

62)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제 4 장 주요 외국의 재난안전관리

구분	재난대응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건축물 평가 - 표류물품, 침수물품 등 보관 및 처리 - 재난대응과정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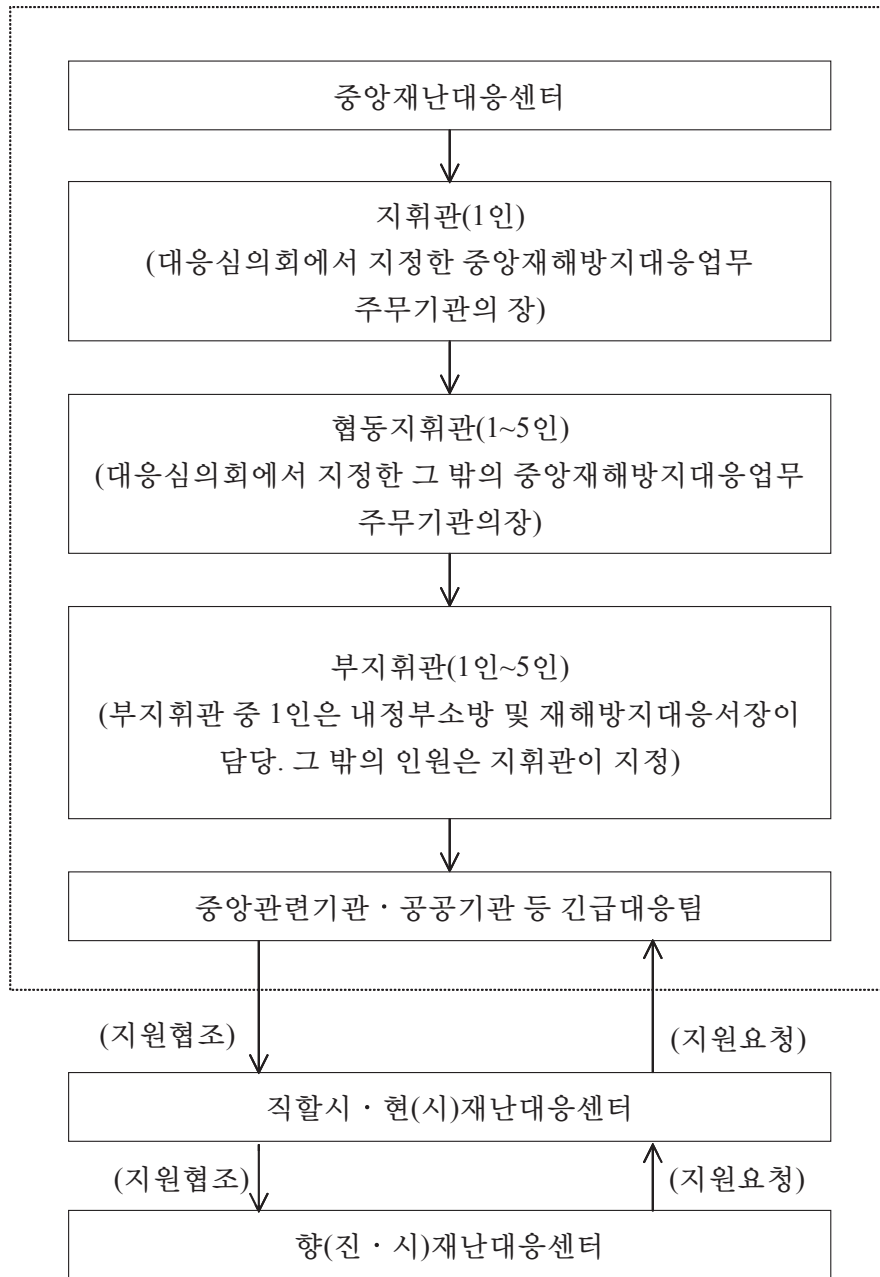
주: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조치사항은 필자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이와 같은 재난대응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관기관은 재해 위험성 정도-재해규모, 성질, 재난상황, 영향범위 및 긴급대응조치 등-를 고려하여 재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난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3조)⁶³⁾. 또한 전술한 주무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광역레벨의 직할시·현(시)에 지방재난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때에 재난대응센터의 재난대응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행정기관-교육부·국방부·법무부·예산회계통계집행총국 등-과 공공기관-행정원국가과학위원회·행정원연구심사위원회·행정원공공건설위원회·행정원원주민족위원회- 및 재향군인회는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⁶⁴⁾.

63)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64)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그림 5> 대만의 재난대응조직-재난대응센터-



출처: 行政院中央災害防救會報: 中央·地方災害防救體系組織架構以及說明
 <<http://www.cdprc.ey.gov.tw/cp.aspx?n=AB16E464A4CA3650&s=97ED16B8B0435D35>>,
 (2016.10.16.최종방문)

이러한 재난대응 대책을 위한 조직구성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는 해당 기간의 장이 지휘관이 되어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1조). 즉 재난대응 책임자가 재난 위험으로부터 긴급대응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행정재량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재난대응 대책에 있어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색으로서 ① 관련 전문직, 기술인력 및 재난구호 물자지원을 위한 운영인력 소집, ② 민간 수색전, 재난구조기구,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장비, 토지, 수자원 이용에 관한 권리, 건축물, 공작물 수용, ③ 국군, 소방, 경찰, 관련정부기관, 민방위부대, 재해방지대응단체 및 재해방지대응지원조직을 지휘·감독하여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조 제4호·5호·6호).

그 밖에도 재난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광역레벨의 직할시·현(시)에서 재난대응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난과 관련 있는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업무 주무기관은 협력인력을 파견하여 지원(제34조 제2문)하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의 미비점⁶⁵⁾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재난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대만의 재난안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 중 수해를 중심으로 재난대응을 살펴보겠다. 대만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특히 수해로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해에 관한 재난안전관리를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관리의 심층을 더하고자한다.

65) 대만의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서 李建中·李至倫은 (1) 방재에 있어 중앙 각 부처의 조정부족, (2) 방재에 있어 상시 준비부족, (3) 인식부족과 행동부족, (4) 대응팀의 기동력부족, (5) 방재의회와 방재센터의 연계부족, (6) 통신네트워크 부족, (7) 소방인원 부족, (8) 구급인원의 장비와 기술부족, (9) 구조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李建中·李至倫 (著), 尹龍澤·劉繼生(譯), “앞의 논문”, P.137~139 참고

3. 재난안전관리로서 수해대응대책

(1) 수해 재난발생 이전

1) 중앙정부의 수해예방조치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로서 수해예방은 크게 수해 예보 및 경보 발령·전달을 담당하는 기관과 구체적 수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해 예보 및 경보발령·전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통부 중앙기상국, 경제부, 농업위원회가 있다.⁶⁶⁾

교통부 중앙기상국은 수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수해경보 전달과 중앙 재해방지 및 대응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의 재해방지 및 대응 관련기관에의 통보하고, 이들 기관이 수립한 재해방지 및 대응계획⁶⁷⁾에 따라 사전에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⁶⁸⁾

경제부는 기상과 홍수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홍수 예·경보를 발령하고,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동식 양수기를 공급하는 등의 재난예방 활동과 역할을 한다.⁶⁹⁾ 이와 관련하여 경제부는 수량과 재

66) 經濟部, 水災災害防救計劃, 中華民國 103年 12月 30日(2014), 中央災害防救會報 第30次會議核定(이하 “水災災害防救計劃” 이라 한다), P.24-25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67) 재해방지 및 대응계획이란 중앙재해방지업무주무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또는 사무를 처리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재해방지대응계획(재난예방구제 계획)을 말한다. <<http://www.cdprc.ey.gov.tw/cp.aspx?n=CB2CC71D8D1BDF11>>, (2016.10.16. 최종방문)

68) 經濟部, 水災災害防救計劃, 中華民國 103年 12月 30日(2014), 中央災害防救會報 第30次會議核定(이하 “水災災害防救計劃” 이라 한다), P.24-25,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69) 水災災害防救計劃, P.22·25,

난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재난대응센터를 2급으로 격상하거나, 태풍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재난긴급대응팀도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는 경제부 재난긴급대응팀의 운영 메커니즘을 설명한 표이다.

<표 15> 경제부 재난긴급대응팀 운영메커니즘

투입등급	투입시기	담당직무	임무	비고
주무차관	필요 시 대응팀운영 시찰	소집인	지휘대응업무 총괄	
수리서서장 (水利署署長)	수시로 대응팀운영 시찰	부(副)소집인	소집인에 협조하여 지휘대응업무를 총괄한다	
본부주임책임 자·수리서· 국영사업관리 위원회·에너지 국·광무국 (礦務局)·공 업국·중앙지 질조사소 및 연구발전위원 회의 장(주관)	수시로 대응팀운영 시찰	위 원	관련대응업무 실시	
수리서막료작 업요원	2급개설 1급개설	개설 및 운영 막료작업 작업요원	1. 대응팀개설 운영 및 각 항의 대응업 무막료작업	각 반 팀장·과장· 작업요원 약 7인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투입등급	투입시기	담당직무	임무	비고
			2. 중앙재난대응센터 위임업무처리	
수리서양수기 전담조절팀	2급개설 1급개설	이동식양수기 조절요원	1. 수리서의 이동식 양수기 조절 지원업무총괄 2. 기타 기관의 양수기조절	매 반 2인
부속 및 관련편제요원	1급 개설	작업요원	1.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대응 및 재난상황 긴급수리자료통보 담당 2. 타이베이시청은 권한과 책임에 관한 대응 및 비취댐방류대응협조업무를 담당한다.	각 부서 매 반 1인

출처: 水災災害防救計劃 附件七 부록 P.7-1

<<http://www.cdprc.ey.gov.tw/Upload/RelFile/1178/660/75589b76-8d27-4c81-9e4c-9445f1d04bd4.pdf>>

(2016.10.16. 최종방문)

주1) 수해 혹은 풍해 중앙재난대응센터 1·2급개설시 개설한다. 경제부의 각 소속기관은 대응팀 설치를 협력한다.

주2) 호우특보 시 수리서는 긴급대응팀(3급개설)을 설치하고 호우가 지속되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리서의 판단 하에 경제부의 재난긴급대응팀으로 격상한다(중앙급의 대응팀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농림위원회는 토석류 재해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석류 피해 경계지역을 발령함과 동시에, 농전수리시설의 준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농전수리회의 재난예방 사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⁷⁰⁾ 양 기관의 재해위험 예·경보는 교통부 중앙기상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해방지 및 대응 관련기관에의 통보체계와 동일한 형태로 전달되어 재난예방 및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은 수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전술한 경제부와 농림위원회 이외에 내정부, 교육부, 위생복지부가 있다.⁷¹⁾

내정부는 수해예방 활동으로 지방정부와 관련 시·구 지역의 배수(排水)·우수(雨水)와 관련한 하수도시설의 정상 운영상황 감독과 지방정부의 수해예방활동 지시 및 감독,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수해 잠재적 위험지역 주민의 대피권고 또는 지시 유무를 감독⁷²⁾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정부는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하위기관이 있는데, 소방서는 각 현·시의 소방기관에 재난구호준비 강화 및 재난구호체제 상시 대기통보⁷³⁾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정서는 관련 경찰부서에 재난방지 및 대응 준비를 강화하고, 산지관리지구에 입산한 자의 행적파악⁷⁴⁾을 하여 사전에 수해로 인한

70) 水災災害防救計劃, P.25,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1) 71) 水災災害防救計劃, P.25 · 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2) 水災災害防救計劃, P.25 · 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3) 水災災害防救計劃, P.26,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4) 水災災害防救計劃, P.26,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인명피해 최소화에 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건서는 국가공원·도시공원의 관리 담당자 또는 지역 건설처에 수해발생 위험을 통보⁷⁵⁾하여 사전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급 학교가 학생등산단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해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조치를 권고하거나 지시하는 지를 감독⁷⁶⁾하고 있고,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는 과학공업구역의 재난긴급대응준비사항을 감독⁷⁷⁾한다. 위생복지부는 수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직할시·현(시)에 수재민 수용 장소 및 지원물자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고립되기 쉬운 취약지역의 지원물자 공급 프로세스 및 운송계획을 수립⁷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의 수해예방은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수해예방조치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로서 수해예방은 수해 예보 및 경보발령·전달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수해예방 조치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⁷⁹⁾

75) 水災災害防救計劃, P.26,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6) 水災災害防救計劃, P.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7) 水災災害防救計劃, P.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8) 水災災害防救計劃, P.26,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79) 水災災害防救計劃, P.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먼저, 지방정부의 수해 예보 및 경보발령·전달과 관련해서 첫째, 토석류 재해위험 경계지역에 수해·토석류 및 산사태발생 가능성에 관한 경계조치를 하고,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때에 피난권고와 대피명령⁸⁰⁾을 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대피장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역주민에게 즉시 알려, 수해 위험의 최소화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전술한 대피권고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노인·영유아·임산부·심신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대피⁸¹⁾시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해위험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재난 위험발생 수위에 따른 예방대책이기도 하나,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위험발생에 대비한 경계조치·대피권고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속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난예방 대책 내지는 조치로서 지방정부는 수해위험 방지 및 대응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준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로서, 수해 위험 최소화와 관련한 준비단계이다. 이것에는 지역주민에게 식수, 식량뿐만 아니라, 전등, 라디오 등 재난구호용품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해로 인한 구조요청에 대비하여 각 급의 재해방지·대응기구 연락처를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⁸²⁾

(2016.10.16. 최종방문)

80) 水災災害防救計劃, P.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1) 水災災害防救計劃, P.25,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2) 水災災害防救計劃, P.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둘째로서, 수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잠재적 수해위험지역 보전계획’에 따라 미리 지정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국 및 향·진·시·구 사무소는 직원을 파견하여 거주민에게 위험지역을 떠날 것을 권고⁸³⁾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단계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경우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인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양수장작업·제방경계 긴급수리·수위관찰 등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사전에 수문 개방과 관련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이동식 양수기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⁸⁴⁾ 반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는 상인이나 주민에게 수해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을 자발적으로 점검⁸⁵⁾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로서, 수해 발생 시 대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수재민 대피소를 개설하고 수재민을 대피시킬 준비를 하고 향·진·시·구의 재난대응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⁸⁶⁾

83) 水災災害防救計劃, P.25・27.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4) 水災災害防救計劃, P.28,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5) 水災災害防救計劃, P.28,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6) 水災災害防救計劃, P.28,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다섯째로서,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응급조치 단계이다. 수해발생으로 크고 작은 부상은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응급조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 긴급구호 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의료 및 간호업무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의료용품과 긴급약품을 비축하여 부상을 입은 수재민을 구호⁸⁷⁾하도록 하고 있다.

(2) 수해 재난발생 이후

중양기상국이 호우정보를 발령한 경우에 수리서(水利署; Water Resources Agenc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긴급대응팀을 설치⁸⁸⁾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강우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고 산발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수리서에 설치된 긴급대응팀을 경제부 재난긴급대응팀으로 격상하여 재난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격상된 재난긴급대응팀은 현(시)정부의 재난대응을 지원한다.⁸⁹⁾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를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피해규모 등 재난발생상황을 수집하고, 경제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규모를 분석하여 수해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⁹⁰⁾

87) 水災災害防救計劃, P.28,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8) 水災災害防救計劃, P.30,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89) 水災災害防救計劃, P.30,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0) 水災災害防救計劃, P.29,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재난발생 초기에 즉시 소방·경찰·민정(民政; civil administration) 등에게 재난상황 수집 및 손실조사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통보⁹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부 또는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수시로 수집한 중대한 재난상황에 관한 자료 및 재난 대응조치를 실시한 사항을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원 원장에게 보고⁹²⁾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방부는 각 책임지역의 지휘관이 능동적으로 각 급 재난대응의 지휘관과 연계하여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병력 투입 및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임무를 실시⁹³⁾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재난복구에 대응할 수 없어서 현지 군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재난대응센터 지휘관의 지시 또는 「국군협조재난방지 및 대응명령(國軍協助災害防救辦法)」에 따라 국군재난구조지원을 신청한다.⁹⁴⁾ 경제부·내정부·국방부·지방정부는 민간재난방지 및 대응단체·주민거주 지구 재난방지 및 대응 지원조직·예비군조직 및 민간방위단체 등의 데이터베이스 및 연계협조메커니즘을 평상시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⁹⁵⁾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1) 水災災害防救計劃, P.29,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2) 水災災害防救計劃, P.33,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3) 水災災害防救計劃, P.33,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4) 水災災害防救計劃, P.33,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5) 水災災害防救計劃, P.33,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이와 같은 재난발생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긴급하고 심각한 경우 전국민방위동원준비체제의 동원인력·물자에 따라 재난복구⁹⁶⁾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2 절 일본의 재난안전관리⁹⁷⁾

일본의 경우 재난안전관리는 방재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일본의 방재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를 상술한 대만의 사례와 같이 수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일본의 재난안전관리 법제 개관

일본의 재난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이다.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방재체제와 방재계획 그리고 각종 재난 위험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그 성격상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각의 재난관리에 있어 세부적 사항-재해예방·재해응급대응 및 재해복구·부흥-은 재해유형, 대응대책 그리고 지원내용에 따라 개별 법률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한 주요 법률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째, 재해유형 또는 발생 형태에 따른 재해예방 관련 법률이다. 여기에는 ① 지진 관련 법률로서 지진방재대책 강화 지역지정, 지진관

(2016.10.16. 최종방문)

96) 水災災害防救計劃, P.33,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97) 일본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6-1’,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을 참고하여 번역·정리한 것이다.

측체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지진대책 특별조치법」과 주택의 내진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있다. ② 화산 관련 법률로서 화산지역의 피난시설 정비 및 강제제거사업 실시 촉진 등을 정하고 있는 「활동화산대책 특별법」이 있고, ③ 풍수해 관련 법률로서 수해 등 발생방지를 위한 하천종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이 있다. 그리고 ④ 토사재해 관련 법률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국토보전대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방법」, 「산림법」, 「지반붕괴 등 방지법」이 있다.⁹⁸⁾

둘째, 재해 위험발생 시 피해자 구조체제 및 구조비용, 재해대응 조직 관련 법률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서 ① 피해자 구조 실시체제, 구조 종류·정도·방법·기간 및 국비지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의 비용분담을 정하고 있는 「재해구조법」이 있다. ② 재해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정하고 있는 「소방법」과 「수방법」이 있다. 그 밖에 ③ 「자위대법」, 「경찰법」 등 조직법에서도 재해대응체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⁹⁹⁾

셋째, 재해복구 및 지원 관련 법률이다. 이 법률에는 ① 재해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 ② 재해복구 및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그리고 ③ 보험공제로 나눌 수 있다. 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생활재건지원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생활재건지원법」과 재해조약금 및 재해 장애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재해조약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자,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금융 공고법」, 「농림어업금융 공고법」이 있다. 그리고 ②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재해복구사업 필요비용의

98)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 P.8
(2016.10.15.최종방문)

99)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 P.8
(2016.10.15.최종방문)

국가 보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과 「농림수산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마지막으로 ③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손해보험, 농림수산업 관계 재해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및 「농업재해보상법」 등이 있다.¹⁰⁰⁾

이상으로 일본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개관하였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재난안전관리를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재해응급대응 및 재해복구·부흥의 제도범주 하에 개별법에서 재해특성을 반영한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분화된 법률 체계 속에서 재해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대책, 계획, 조직, 지원제도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난안전관리로서 방재계획 체계

재난안전관리로서 방재계획은 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3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¹⁰¹⁾ 방재기본계획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방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본계획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인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그리고 재해복구·부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재기본계획에 있어 재해예방으로서 (a) 상정재해의 적정한 설정, (b) 재해에 강한 국가형성 및 도시조성, (c) 국민의 방재활동 촉진, 그리고 (d) 신속한 대응대책과 복구·부흥 준비 등을 주요 사항으로 하

100)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 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 P.8

(2016.10.15.최종방문)

101) 일본의 재난관리조직체계는 국토청방재국에서 총괄하고 각 성·청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한다. 김영근, “일본의 재해부흥문화에 관한 일고찰: 재난관리체계 및 구호제도·정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6권제4호, P.1043-1044

고 있다. 그리고 재해응급대책으로서 (a) 정보수집·연락 및 활동체제 확립, (b) 구조·구급, 의료 및 소방활동, (c) 긴급운송교통 확보 및 긴급운송 활동, (d) 피난수용 및 정보제공 활동, (e) 물자조달과 공급활동, (f) 2차재해 및 복합재해 방지활동, (g) 자발적 지원체제 등을 주요 활동 항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및 부흥으로서 (a) 지역복구 및 부흥의 기본방향 결정, (b) 신속한 현상복구 추진 방법, (c) 계획적 복구 추진 방법, 그리고 피해자 등 생활재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²⁾ 이러한 방재기본계획은 중앙방재회의에서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재업무계획은 방재관련기관의 소관사무 및 업무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의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방재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지정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정공공기관으로서 일본은행, 일본적십자, NHK, 이동통신사인 NTT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방재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¹⁰³⁾

지방정부는 상술한 방재업무계획에 근간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대응 조치에 관해 광역레벨과 기초레벨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도부현방재회의 및 시정촌방재회의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¹⁰⁴⁾

102)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 P.11
(2016.10.15.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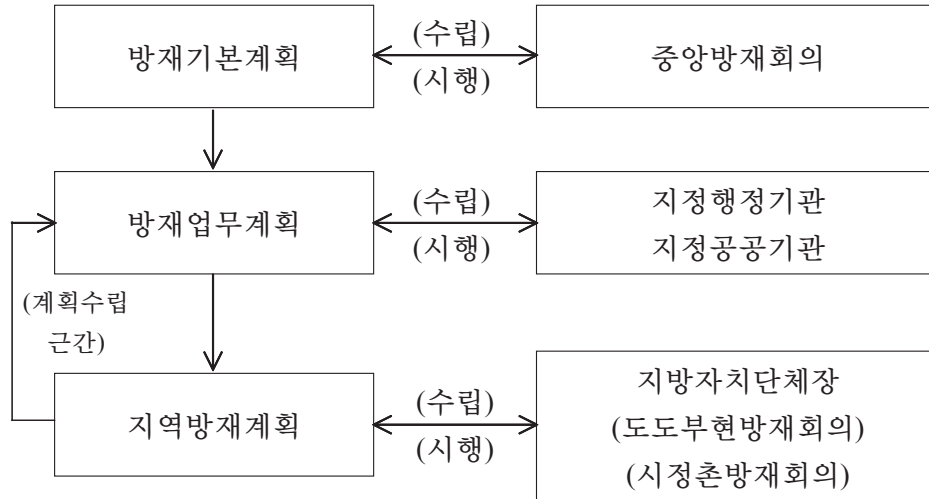
103)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 P.10
(2016.10.15.최종방문)

104)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 P.10 (2016.10.15.최종방문)

<그림 6> 재난안전관리로서 방재계획 체계



출처 :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자료6-1’
 <<http://www.cas.go.jp/jp/seisaku/resilience/dai1/siryou6-1.pdf#search>>P.11
 (2016.10.15.최종방문)

3. 재난 대응 및 대피 체계

(1) 재난대응으로서 수해 예·경보시스템

수해 예·경보와 관련하여 종래 일본에서는 발표자가 통일 하천정보시스템 등에서 수위·유량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각 관계기관에게 송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1999년 후쿠오카수해, 2000년 동해호우, 2004년 전국적인 수해를 계기로 2005년에 수방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수해예방의 충실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으며, IT기술을 통한 수해 예·경보시스템을 국토교통성이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¹⁰⁵⁾

105) 木村典嗣·安陪和雄, ‘洪水予警報等作成システムについて’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해 예·경보시스템은 국토교통성의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각 단말기로부터 수해정보(범람포함)외에 수방정보, 수위주지하천의 수위도달정보 등 재해정보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통일 하천시스템과 접속하여 발표구간 마다 현재 수위, 예측수위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⁶⁾

또한 수해 예·경보와 관련된 정보 작성을 FAX와 컴퓨터 메일, 휴대전화문자, Web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단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¹⁰⁷⁾

이러한 수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상호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 상호협력·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연락회를 활용¹⁰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락회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작성한 수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방재담당부서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수방단에게 수해 관련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상호협력·연계를 통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는 오늘날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http://www.river.or.jp/01kenshuu/sympo/h22/img/report_08.pdf#>, P.8-4
(2016.10.23.최종방문)

106) 일본의 수해 예·경보시스템의 작성과정에 관해서는 木村典嗣·安陪和雄, ‘앞의 보고서’, P.8-4~8-13 참고

107) 木村典嗣·安陪和雄, ‘洪水予警報等作成システムについて’
<http://www.river.or.jp/01kenshuu/sympo/h22/img/report_08.pdf#>, P.8-6~8-7
(2016.10.23.최종방문)

108) 연락회의 설립목적, 활동 및 구성원에 관해서는 国土交通省中部地方整備局, ‘各連絡会・協議会の概要-別紙1’ 참고
<http://www.cbr.mlit.go.jp/numazu/pressrelease/kisya-h26/pdf/kisya_h26_014_2.pdf#>, (2016.10.23. 최종방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락회 조직에 관해서는 山形県, ‘第2章 県における水防組織-地区水防連絡会の組織’, P.9-10 참고
<<https://www.pref.yamagata.jp/ou/kendoseibi/180006/publicfolder201004278587559221/H27suibokeikaku/01-2keikakuhen.pdf>>, (2016.10.23.최종방문)

(2) 재난대비로서 수해 Hazard Map

최근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수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단시간에 하천이 증수하거나 제방이 무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해 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수해 위험을 인식한 후에 범람 때의 위험 지역이나 피난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자로부터 제공된 침수예상구역 및 상정되는 수심을 표시한 도면-침수예상 구역도-에 수해 예보 등 전달 방법, 피난 장소 그 밖에 수해 때의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수해 Hazard Map을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수해 Hazard Map은 2001년에 개정된 수방법 제15조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포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성은 수해 Hazard Map 작성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통일적인 수해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수해 Hazard Map 작성 요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수해 Hazard Map 구성 체계

국토교통성이 작성한 수해 Hazard Map 작성요령에서는 제방붕괴, 수해 범람 등 발생 시의 침수정보 및 피난 정보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해 Hazard Map을 작성할 때에 1. 침수상정구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하며, 2. 피난정보의 게재, 3.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주체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¹⁰⁹⁾

따라서 이 작성요령에 있어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I. 기초자치단체의 수해 Hazard Map 작성 기본사항 검토, II. 기재사항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주요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6> 수해 Hazard Map 작성사항

구분	주요항목
기본사항 부분	-수해 Hazard Map 작성형식 -지도 작성범위(표시구역) -지도 축척
기재사항 부분	-지도상에 표시할 항목 ① 침수상정구역과 침수심구역과 쓰나미기준수위 ② 침수계속시간이 장시간인 구역 ③ 피난장소소 등 ④ 조기 피난이 필요한 구역 ⑤ 토사재해경계구역 ⑥ 수위관측소 위치 ⑦ 방재관계기관 및 방재비축 창고 -정보·학습에 기재하는 항목 <피난활용정보> ① 홍수예보, 피난권고 전달방법 ② 피난권고 사항 ③ 수해 시의 정보와 그 수신·습득방법

109)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8 (2016.10.15. 최종방문)

구분	주요항목
	④ 피난장소 등의 일람 ⑤ 수해시나리오 ⑥ 지하상가에 관한 정보 ⑦ 그 밖의 사항 <재해학습정보> ① 수해 발생 메커니즘 ② 지형과 범람형태 ③ 과거 수해에 관한 정보 ④ 수해 범람 시에 발생하는 사항 및 피난 시의 주의사항 ⑤ 수해 대비요령 ⑥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의 사항

출처: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index.html>
(2016.10.15. 최종방문)

2) 수해 Hazard Map 작성 프로세스

수해 Hazard Map은 국토교통성 또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제공되는 침수 예상 구역도를 토대로 작성되게 되지만, 시장은 침수예상구역도면 작성 범위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성 또는 도도부현과 조정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작성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¹⁰⁾

수해해저드 맵은 평상시에 주민이 보고, 수해 위험을 인식하고 어떻게 피난을 갈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피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

110)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6 (2016.10.15. 최종방문)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피난 정보와 안전한 피난 장소에 피난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¹¹¹⁾

지역에 따라 지형 특성만 아니라 수해의 특성도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시정촌은 침수구역이 침수뿐만 아니라 대략의 침수 지속 시간 등 침수 형태에 관한 정보에 대해 국토교통성 또는 도도부현과의 정보 공유,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기재할지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²⁾

또한 대규모 수해 시 또는 범람, 지형 특성상 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유효한 피난 계획이 입안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일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이런 경우에는 광역적인 피난 계획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검토·입안하고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계획 내용을 수해 Hazard Map에 반영하여야 한다.¹¹³⁾

111)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32 (2016.10.15.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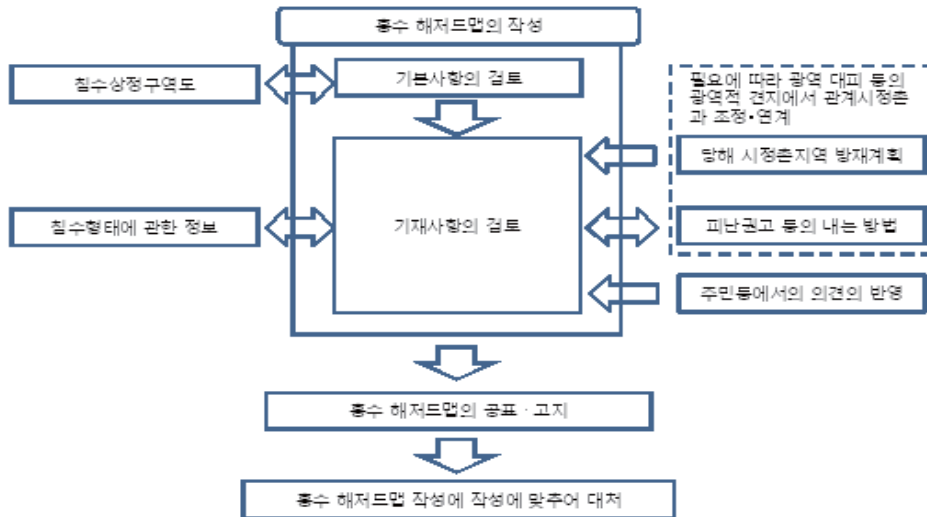
112)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6 (2016.10.15. 최종방문)

113)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32 (2016.10.15. 최종방문)

<그림 7> 수해 Hazard Map 작성 프로세스



출처: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index.html>
 (2016.10.15. 최종방문)

3) 수해 Hazard Map 주요내용

①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수해 Hazard Map는 수해로부터 주민 스스로 적절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피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으나,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판단 하에 피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의 수해 Hazard Map는 작성에 있어 ‘개인에 처한 상황에 따른 피난활동’을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수해 등 재난 시 옥외 피난을 기본으로 하나, 옥외로 피난하는 것이 더욱더 위험한 경우에 옥내에서 안전 확보¹¹⁴⁾

114)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를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에 관해서 피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침수심이 50cm-무릎 이상-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2층이나 주변의 가까운 높은 곳으로 피난¹¹⁵⁾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② 지역 항목

주민의 정확한 피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이 평상시부터 알아야 할 항목을 지역의 침수형태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선정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자연 수해특성이나 사회특성에 따른 정보에는 피난 시에 활용하는 정보인 “피난 활용정보”와 평상시에 방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인 “재해 학습정보”가 있다.¹¹⁶⁾

지역항목은 작성 주체인 시정촌장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해 Hazard Map 작성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항목이다. 지역특성의 경우에는 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범람특성을 중심으로 한 수해특성과 주민의 수해 경험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 상황과 같은 사회특성이 고려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항목에 유의할지에 관해서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수해 시 위험성이나 주민의 방재의식, 지역 커뮤니티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⁷⁾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17 참고 (2016.10.15. 최종방문)

115)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64 (2016.10.15. 최종방문)

116)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4 참고 (2016.10.15. 최종방문)

117)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③ 피난 권고에 관한 사항

각 하천에서는 피난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천 수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주민은 수해 시의 피난행동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 하천 수위정보 등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하천 수위와 피난하는 방식과의 관계를 모르면 수위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응해 해야 할 피난행동과의 관계를 수해 Hazard Map에 표시하여 주민의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¹¹⁸⁾

시정촌지역의 방재계획이나 수해방지계획에서 정해진 피난권고 등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발령되는지, 또한 주민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난권고 등에 관련된 발령의 판단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은 시정촌에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피난권고 등 발령의 판단기준을 주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¹¹⁹⁾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재난-수해-로부터 사전에 그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대피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 시스템이 적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시 주민들의 재난 위험성과 대피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재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ap_tebiki_1.pdf> P.12-14 참고 (2016.10.15. 최종방문)

118)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63 (2016.10.15. 최종방문)

119)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62 (2016.10.15. 최종방문)

이를 위한 방편으로 일본의 경우, 특히 수해 Hazard Map와 관련하여 작성과 배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지역행사를 이용한 알림서비스, 지역 방재계시판 게시, 각종 공공시설물에의 표시,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등을 활용하여 대피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제 3 절 시사점

대만의 재난안전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 위험 예방 및 최소화 시스템을 중앙과 지방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재해유형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동일한 재해에 있어 각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지방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미리 대피장소를 알려 주는 것, 그리고 대피에 있어 사회적 취약자 또는 우선 보호대상자를 정해 두고 있는 것,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응급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를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로만 접근하지 않고, 국민을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중앙의 시스템을 적용하되, 자율적으로 재난안전관리책임자가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음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재난안전관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재난안전관리를 ‘방재’라는 큰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주 안에서 재난 위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구체적 계획과 이행 방안을 계획이행 주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조직에 관해서는 체계화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연계된 재난

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항은 재난유형·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책임자의 결정재량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술한 작성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 해 주는 내용이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의 국가와 광역레벨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있다. 즉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수해 예방 및 최소화에 필요한 자료제공, 해당 지역의 침수예상지역 시뮬레이션, 작성방법 조언 및 우수사례 소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지원하는데 있다¹²⁰⁾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재난안전관리는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다음으로서 지역주민, 통학·통근자, 여행자 등의 안전 확보로서 수해 Hazard Map을 통해 재난 위험의 1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재난 예방도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여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대피활동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이 책무, 환언하면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한 일본의 사전적 재해예방대책은 최근 우리의 재난 위험대응활동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120)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총편’, 2016.4.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ku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P.8 (2016.10.15. 최종방문)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종합적·통합적 체제로 되어 있다. 즉 중앙에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조직구성 그리고 이행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방에 적용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과 같이 종합적인 개발이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계획법제 또는 개발법제에는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종합적·통합적인 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있다. 종합적·통합적인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서,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적 사항 또는 상호 연계를 통해 재난 예방·대응·대비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서, 재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증후를 보이는 때에 현장에서의 재난대응 활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즉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라 하겠다. 이것에 해당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로서 재난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대책본부, 수습본부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책임자-지방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재해 위험예방 및 최소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해위험의 1차적 대응기관이기 때문이다.¹²¹⁾

121) 오늘날의 복합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고려할 시 고려사항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재난관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이와 관련해서 현행 재난안전관리의 계획체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계획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¹²²⁾ 이하에서는 현행 재난안전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해 고찰하겠다.

먼저, 현재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총 4단계의 계획체계가 되어 있다. 이 계획에 있어 체계가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립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및 지역특성과 재해대응 등과 연관되어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현행 계획수립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계획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근간하여 소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본인이 작성한 재난안전관리업무계획 시행을 위한 ② 집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확정된 이 계획을 광역레벨의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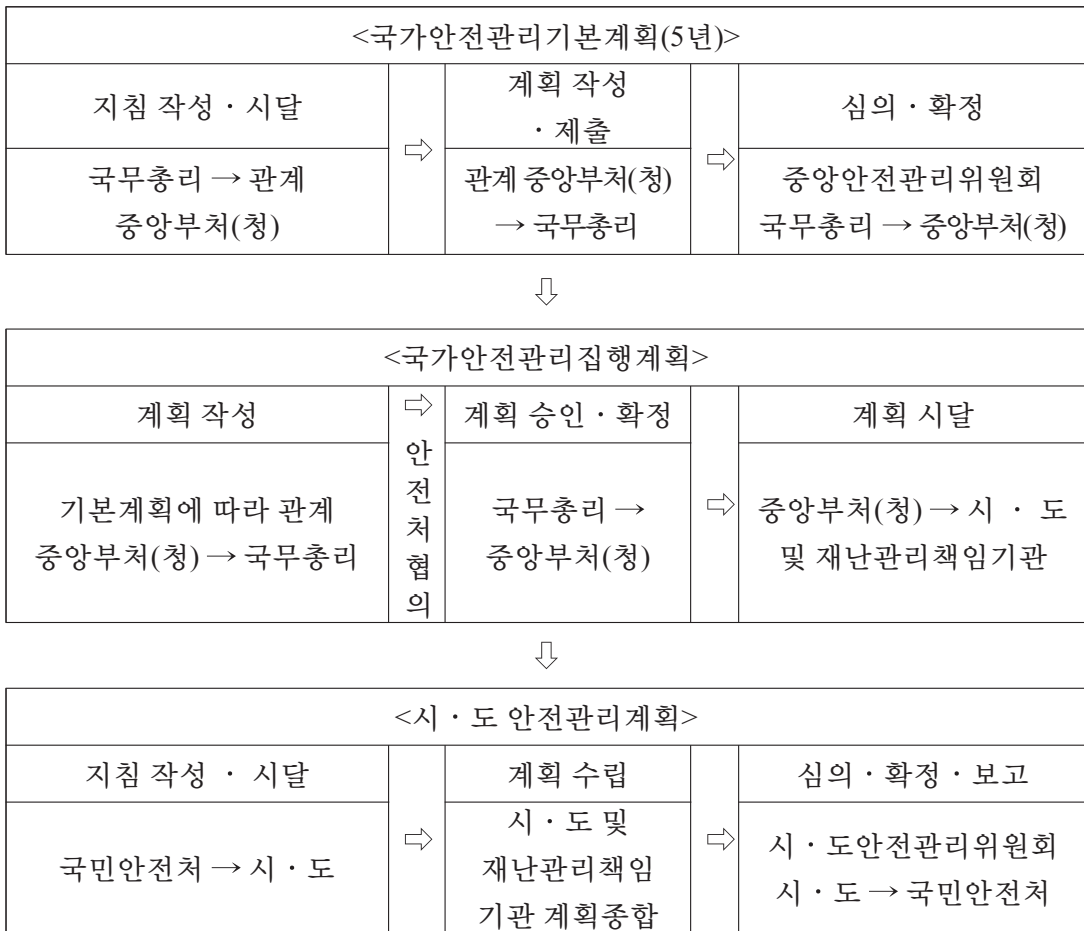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계획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역레벨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①과 ②의 계획에

이유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재은·이우권, “한국의 복합재난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제9호, 2014.9., P.21

12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업무수행 책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처리의 제한)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찬권, “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제7호, 2013.7., P.71 재인용

기초하여 광역레벨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받고, 이에 더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관의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계획도 종합하여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초레벨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은 광역레벨의 안전계획을 반영한 수립지침과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관의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계획도 종합하여 ④ 기초레벨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¹²³⁾

<표 17>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123) 이에 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25조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20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지침 작성 · 시달		계획 수립	심의 · 확정 · 보고
시·도 → 시·군·구	⇨	시·군·구 및 재난관리책임 기관 계획 종합	⇨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 시·도

출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204

이와 같은 현행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체계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는 일체적·종합적·통합적 체계도 필요한 부분과 그러하지 않고 재난의 특성-국지적·피해의 집중적 등-과 1차적 대응의 즉시성·시급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수립에 있어 자신의 지역특성과 재해발생 상황, 재해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관장과 협의를 통해 이 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고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1차적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18>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	제25조의2(시·도 및 시·군·구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시

현행	개정안
<p>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p> <p>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달 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6.8.]</p>	<p>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관한 협의사항을 종합하여 지방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2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p>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현행	개정안
<p>케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p> <p>②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6.8.]</p>	
<p><신설></p>	<p>제25조의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의 관계) ①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p> <p>② 지역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의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시·도의 지역안전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p>

이와 같은 계획수립 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규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계획수립-광역도시계획수립권자·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관계설정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안전법에서 1.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안전관리계획,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등을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재난 예방조치로서 필요한 사항-재난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재난 예측과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재난위험 발생 인자가 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의2 제1항).

이것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위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지역특성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환언하면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적정 수준에서 해당 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 지도는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도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중앙정부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및 안전위원회 운영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고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재난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서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한 자료제공, 과거에 발생한 재난발생 및 피해상황을 반영한 재난 위험지역의 예측 피해규모 시뮬레이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활성화, 지역 재난 예방 교육 및 홍보, 재난발생 시 대피요령, 안전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도 재난안전관리의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다.

<표 1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업무 지원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p>	<p>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으로 재난관리 책임자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하는데, 이때에 국민안전처에서 시달한 수립지침에 기

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작성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의4).

여기서 문제는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자로서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¹²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국민안전처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 대응활동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된다. 재난위험의 최소화에도 있어 재난예방조치 사항도 중요하지만, 재난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사항이다.

재난대응활동은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더 나아가 헌법 제34조제6항의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법률의 목적과 헌법상의 의무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수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활동계획 수립에 있어 작성방법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수립권자에게 조언해 주고, 그 밖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수립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 참고

<표 20>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수립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u>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3.8.6.>]</p>	<p>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p> <p>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 및 활용방법 등의 조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언을 받은</u>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8.6.]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3.8.6.>]</p>

2. 정책적 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도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연구자의 견해에 입각하여 제언하였다(이에 관해서는 제3장 제3절 소결 참고).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고려되어야 할을 염두에 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조직체계-안전관리기구, 재해대책안전본부, 재난안전상황실 등등-를 두고 있다. 다만, 재난 위험예방 및 최소화와 관련하여 현재 조직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과 재난방송이다.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재해 위험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데, 이 예·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하고, 통보받은 자는 재난 예방 및 대응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재난방송 관련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이와 같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서는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재난 예방과 대응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난안전법 제12조에서는 재난 위험예방으로 예보·경보·통지, 그리고 피해발생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재난발생 위험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빠른 대응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재난 위험수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이 재난발생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 예·경보 발령과 동시에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재난방송 관련 사업자도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²⁵⁾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주관기관만의 노력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협의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상호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한 안전공동체를 형성하여야만 재난 위험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지속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하진 않는 사회전반의 재난안전관리 기반조성¹²⁶⁾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라 하겠다. 다만, 이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위험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데¹²⁷⁾, 시·군의 4곳, 시·도의 14곳 총 18곳¹²⁸⁾을 제외

125) 재난예·경보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재난 예·경보는 실제 재난발생이 임박한 경우에 발령되므로 경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은·이우권, “앞의 논문”, P.27

126)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P.207

1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 참고

128)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 및 자치법규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참고

하고는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능으로서 1. 재난 및 안전관리 위협요소, 취약시설 모니터링과 제보, 2.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⁹⁾

또한 그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나누고 있는 데,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으로 하고 있다.¹³⁰⁾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서 재난 위협예방활동과 재난대응 활동을 단체나 전문가와 전개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안전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한 역할로서 지역 재난예방 및 대응의 홍보자, 또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데,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역할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안전망 구축, 맞춤형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이다.

그러므로 재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전술한 주민 참여 안전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평상시 활동에 재난안전관리 전문가에 의한 지역주민 재난안전관리 교육 실시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공동체 형성으로서 해당 거주지역의 통장·반장 또는 공동집합건물의 동장을 통해 재난안전관

12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부록 자치법규 참고

130)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3 제1항 및 부록 자치법규 참고

리를 홍보하게하거나, 이들을 통해 이웃주민에게 재난발생 시 알림과 대피장소로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동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¹³¹⁾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난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위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재난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¹³²⁾ 환언하면 재난안전관리 연계강화 시스템의 구축이라 하겠다.

이것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률상의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과 재난안전관리주관기관을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마련하고, 이 협의회에서 재난안전관리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³³⁾

이상으로 정책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재난안전관리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에 의해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재난예방·대응·대비·복구 능력의 효과가 향상되는 분야가 아니다. 재난안전관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구성원 모두의

131) 지역안전공동체형성과 관련해서 재난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종교단체, 주민자치센터, 지역자원봉사센터 등-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재은·이우권, “앞의 논문”, P.28

132) 재난관리는 어느 단일기구의 전담사항이 아니라 협동적인 정부간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정부부처간·정책간 협력강화를 통한 복잡한 행정문제 대처 및 국민 수요에 맞춤형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협업행정이 필수이며, 국민중심의 행정실현은 민간부문과의 협업으로 공공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덕준, “미국 재난관리체계와 정부 간 관계”, 한국정책연구 제4권제2호, 2014.12., P.41, 성기환·최문일, “앞의 논문”, P.341참고

133) 정부간 협력은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정책관점과 정부간 연계네트워크 내에서 재난관리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김덕준, “앞의 논문”, P.41

재난관리·안전관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재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위험의 초기대응자로서 재난안전관리 체계강화 및 역할의 세분화와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¹³⁴⁾, 또한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역의 수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거버넌스와 안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134) 재난대응업무의 신속·효율성은 재난이 발생할 시설물이나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해룡, “앞의 논문”, P.227

참고문헌

1. 참고논문

- 강인호,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와 시사점”,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집, 2008.1.
- 권영세,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과 정책방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제35권, 2005.11.
- 김덕준, “미국 재난관리체계와 정부 간 관계”, 한국정책연구 제4권제2호, 2014.12.
- 김뢰호 · 권용수 · 김혜영,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제3호, 2014.
- 김영근, “일본의 재해부흥문화에 관한 일고찰: 재난관리체계 및 구호 제도 ·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6권제4호
- 김해룡,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2.
- 문현철,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위기관리연구 제3권, 2009.12.
- 성기환 · 최문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제2호, 2014.2.
- 양기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지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의 비교론적 관점”, 사회과학연구 제34권제3호, 2008.
- 임종현, “독일의 재난관리 시스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제1호, 2016.3.

참고 문헌

-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와 관료사회 부패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6.
- 이재은·이우권, “한국의 복합재난대응과 위기관리체계 발전방향”, 한국 위기관리논집 제10권제9호, 2014.9.
- 이채언,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위기관리 학회, 제4권제1호, 2012
- 이종열·박광국·조경호·김옥일, “국가위기관리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제2호, 2004.8.
- 임상규·최우정·곽창재, “재난대응활동계획 기반의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 연구”, 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
- 임상규, “정부 3.0기반의 재난관리 3.0구축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6.
- 정극원, “재난대응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의 법적 방안”,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 정찬권, “국가위기관리 조직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제7호, 2013.7.
- 최미옥,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제2호, 2010.6.
- 한형서, 이종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위기관리시스템-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4(1)
- 佐々木一如, “危機管理における基礎自治体の役割－危機管理に関する市民と行政の認識の相違に関する考察－”, 政治学研究論集 第21号, 2005.2.

李建中·李至倫 (著), 尹龍澤·劉繼生(譯), “台湾における防災政策の現状と課題”, 創価法学 第37卷 第2号, 2005.

2. 참고자료

經濟部, 水災災害防救計劃, 中華民國 103年 12月 30日(2014), 中央災害防救會報第30次會議核定

木村典嗣·安陪和雄, ‘洪水予警報等作成システムについて’

安城市·市民生活部防災危機管理課, ‘安城市危機管理指針

내각부, ‘일본의 자연재해와 재해대책 자료6-1’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2015년도 지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2016.3.

법제처, ‘2015 법률제명약칭기준’, 2016.1.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Magazine/magazineData?pstSeq=71328>>, (2016.10.22. 최종방문)

경남신문, ‘경남 자연재해 대형화·빈번화(하) 구호·복구대책 촘촘하게’, 2016.10.20. 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94824>>, (2016.10.22.최종방문)

공감신문, ‘국회 지진토론회-저층 건물은 지진위험지대…내진 보강해야’, 2016.10.18.기사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6532>>, (2016.10.22.최종방문)

참고 문헌

국토교통성 수관리·국토보전국 하천환경과 수방기획실, ‘수해 Hazard Map 작성 입문’, 2016.4.

国土交通省中部地方整備局, ‘各連絡会・協議会の概要-別紙1’
山形県, ‘第2章 県における水防組織-地区水防連絡会の組織’

3. 참고사이트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http://www.law.go.kr/lsc.do?menuId=0&subMenu=1&query=#undefined>
(2016.9.26. 최종방문)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10.7. 최종방문)

<https://kotobank.jp/word/PDCA> (2016.10.22. 최종방문)

<http://www.mpss.go.kr/home/mpssIntro/orgIntro/history/> (2016.9.26. 최종방문)

<http://www.open.go.kr> (2016. 8.25. 최종방문)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D0120014>
(2016.10.16. 최종방문)

<https://zh.wikipedia.org/wiki/%E8%87%BA%E7%81%A3%E8%A1%8C%E6%94%BF%E5%8D%80%E5%8A%83> (2016.10.16. 최종방문)

<http://www.cdprc.ey.gov.tw/cp.aspx?n=A90D0BC92F9A1D47> (2016.10.16. 최종방문)

<http://www.cdprc.ey.gov.tw/cp.aspx?n=AB16E464A4CA3650&s=B7411BDCD003C9EC> (2016.10.16. 최종방문)

<http://www.cdprc.ey.gov.tw/cp.aspx?n=AB16E464A4CA3650&s=97ED16B8B0435D35> (2016.10.16. 최종방문)

<http://www.cdprc.ey.gov.tw/cp.aspx?n=CB2CC71D8D1BDF11>
(2016.10.16. 최종방문)

- <http://www.cdprc.ey.gov.tw/Upload/RelFile/1178/660/75589b76-8d27-4c81-9e4c-9445f1d04bd4.pdf> (2016.10.16. 최종방문)
- http://fhy.wra.gov.tw/PUB_WEB_2011/Page/Frame_MenuLeft.aspx?sid=12&tid=34 (2016.10.16. 최종방문)
- <http://www.cas.go.jp/seisaku/resilience/dai1/siryoun6-1.pdf#search>> (2016.10.15. 최종방문)
- http://www.river.or.jp/01kenshuu/sympo/h22/img/report_08.pdf# (2016.10.23. 최종방문)
- http://www.cbr.mlit.go.jp/numazu/pressrelease/kisya-h26/pdf/kisya_h26_014_2.pdf# (2016.10.23. 최종방문)
- <https://www.pref.yamagata.jp/ou/kendoseibi/180006/publicfolder201004278587559221/H27suibokeikaku/01-2keikakuhen.pdf> (2016.10.23.최종방문)
-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suigai_hazardmap_tebiki_1.pdf (2016.10.15. 최종방문)
- http://www.mlit.go.jp/river/basic_info/jigyo_keikaku/saigai/tisiki/hazardmap/index.html (2016.10.15. 최종방문)
- <http://blog.naver.com/ssacstat?Redirect=Log&logNo=220498105371> (2016.10.22. 최종방문)

부 록

< 부록 1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1.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례 주요내용

(1) 경상남도 재난안전관리 조례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¹³⁵⁾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난발생 시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³⁶⁾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5 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 라.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3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자료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³⁷⁾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책본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통제관 및 담당관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할 수 있다.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의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④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대응체계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13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 4 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 라. 대책본부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④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대응과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기능) 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휘

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군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도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

3. 보고서식: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료 :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¹³⁸⁾

(2) 울산광역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13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¹³⁹⁾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3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⁴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2.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5.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또는 임차(단, 제설차량 구입 제외)
6.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장구 구입
8.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9.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
10.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11.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12.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구입
13.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방역초소 설치
14.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15. 그 밖에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¹⁴¹⁾

14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4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군 대책본부”이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군 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본청 실·국·본부의 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대책본부의 상황실장이 된다.
6. 협업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재난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6 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유형별 수습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유형별 수습을 주관하는 본청 실·국·본부의 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 상황실로 응소하여야 하며, 응소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등록부 및 근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피해상황보고(상황실장 지시 등)를 할 경우에는 부여된 업무에 따라 소관시설물(사유시설 포함)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상황보고 30분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지원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

- 2. 상황실장
-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 3.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 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구·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구·군 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구·군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구·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준비단계), 주의(비상 1단계), 경계(비상 2단계), 심각(비상 3단계)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구·군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외에 재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구·군 본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책본부회의는 해당 재난업무의 수습을 주관하는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본부장, 차장, 총괄지원관
 -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④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료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¹⁴²⁾

(3)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 조례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 제 2 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자료 :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¹⁴³⁾

14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4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 9 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¹⁴⁴⁾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점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⁴⁵⁾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주요 내용>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4조 관련)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 「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14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¹⁴⁶⁾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3 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4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구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 6 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

-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지원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 1. 재난상황팀장
 -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 4. 도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군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 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시·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구성·운영) ①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재난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의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재난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료 :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¹⁴⁷⁾

14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2.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3.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5.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7. 그 밖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료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¹⁴⁸⁾

(4)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책본부를 둔다.

14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회의 등)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전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및 업무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자치구, 공사, 공단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4조(재난예방조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

제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자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9조(재난통계) ① 시장은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자치구·긴급구조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대응조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¹⁴⁹⁾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주요 내용>

제 5 조(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승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14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조치의 이행
-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8. 기본법 제3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료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¹⁵⁰⁾

(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15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 6 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자료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⁵¹⁾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주요 내용>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¹⁵²⁾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단,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분쟁 및 공공건설사업장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함.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15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5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⁵³⁾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주요 내용>

제 4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재난예방 교육·홍보
다. 재난대응대비훈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내시설의 설치
사. 물놀이 등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구입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자료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¹⁵⁴⁾

15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5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설치·운영기간)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3 조의2(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6. 재난상황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제 6 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 7 조(상황판단회의)

- ①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

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이 예견되는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재난발생의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기반체계와 관련된 여론에 주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관계 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7조(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장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시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복구단계의 상황관리)

- ① 제2조제12호의 복구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기능정상화 여부,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¹⁵⁵⁾

(6) 전라북도 재난안전관리 조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도지사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⁵⁶⁾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기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2조(도 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도 대책본부를 둔다.

제33조(도 대책본부의 기능)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15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9. 그 밖에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도 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하거나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상황판단회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2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도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료 :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¹⁵⁷⁾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주요 내용>

제 4 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다음 각 목의 보수·보강사업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15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나.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 라. 「하수도법」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바.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 아.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자. 「항만법」제2조제5호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 차. 「어항법」제2조제3호가목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카.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 3.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대차비용 용자
-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9.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 10.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의 시급한 구입
- 11.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1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 13.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14.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15.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16. 재난관련 장비구입
- 17. 기타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¹⁵⁸⁾

2.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례 주요내용

(1) 전라남도 광양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¹⁵⁹⁾

15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5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⁶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16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자료 :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⁶¹⁾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광양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광양시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광양시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 준비단계: 별표 2와 같이 편성하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와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 ② 비상단계 광양시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광양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광양시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 ④ 광양시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7 조(상황판단회의)

-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안전상황실 관리 부서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광양시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4. 광양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자료 :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¹⁶²⁾

16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2) 경기도 파주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1.2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9 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¹⁶³⁾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5 조(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 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6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자료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⁶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역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6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기반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기반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

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본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2호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제27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¹⁶⁵⁾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응단계)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기관이 그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단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책임기관에 전파
2. 현장출동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의 출동준비 및 재난현장 도착
3. 현장조치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4. 긴급복구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의 신속한 투입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

제 4 조(설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

16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p>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나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7. 홍수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p>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p> <p>제 1 절 상황전파</p> <p>제 2 절 출동</p> <p>제 3 절 조치</p> <p>제 4 절 긴급복구</p> <p>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p>

자료 :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¹⁶⁶⁾

(3) 경상남도 양산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p>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시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16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¹⁶⁷⁾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⁶⁸⁾

16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6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 라.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나. 재난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예보·경보시설(관측용 카메라 포함)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자료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⁶⁹⁾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

16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 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 ① 본부장·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 ①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기반보호상황실·도재난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 ①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도재난상황실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기반보호상황실·도재난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 ①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 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¹⁷⁰⁾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17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¹⁷¹⁾

(4) 경기도 남양주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남양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17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¹⁷²⁾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 8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의견청취)

-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¹⁷³⁾

17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7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 라.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 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 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아. 재난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등의 전기 사용료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남양주시가 소유·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과 재난예방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자료 :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⁷⁴⁾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2. 인적재난 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지역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재난종합상황실장 및 기반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7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상황 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및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 5급 공무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지원관은 재난현장에 파견되는 즉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지원본부의 설치를 지원하고 현장상황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기반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경기도기반재난상황실, 관계 중앙부처 상황실, 시기반재난상황실(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10호 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

석하여 경기도, 관계중앙부처 기반재난상황실(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기반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수 있다.

③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조치사항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및 경기도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39조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을 경기도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¹⁷⁵⁾

(5) 경상남도 함안군 재난안전관리 조례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7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상급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¹⁷⁶⁾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7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⁷⁷⁾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자료 :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⁷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재난대비체제)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

17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7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한다.

1. “준비단계”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2.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③ 기반재난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한다.

1. “예방”이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 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 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단계”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 될 경우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함안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7조제3항제1호의 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경상남도 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7조제3항제2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 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경상남도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경상남도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7조제3항제3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사람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¹⁷⁹⁾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17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¹⁸⁰⁾

(6) 경기도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

18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단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⁸¹⁾

18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 나. 용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다.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마.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장비 확보
 -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보강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 CCTV,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용인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자료 :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¹⁸²⁾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의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18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가.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나. 사전대비단계는 재난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포함한 관계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 가.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 보고
-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은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은 14일 이내에 보고
-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이 조사 완료한 사항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한다. 다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

자료 :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¹⁸³⁾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18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제방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¹⁸⁴⁾

18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7) 충청북도 충주시 재난안전관리 조례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 (이하 “지역축제행사”라 한다) 및 시장이 충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의 성격, 위험도,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¹⁸⁵⁾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 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8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
- 5. 안전 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9 조(자문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시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⁸⁶⁾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와 제4조의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 활동
 - 가.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과 보수·보강
 - 나. 풍수해, 눈피해, 낙뢰, 가뭄 등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물자, 자재, 장비구매, 임차 등의 사용
 -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결과 나타난 재난 위험 요인의 제거와 시설 물의 보수·보강

18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 대응 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마. 안전 문화 육성과 지원 활동 사업
-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구매,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와 보수·보강
 - 가. 자연재해 저감 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의 보수·보강사업은 가능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보(洑)·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와 관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댐
 - 「도로법」 제2조제2항의 터널, 교량,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 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육교
 -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보수·보강
 - 자동 우량 경보시설,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재해 문자전광판, 산간 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 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 3.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에 따른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응급조치
 - 나. 상습 가뭄 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 다. 제설용 자재 구매와 장비의 임차 등
- 4. 충주시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을 위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매
-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을

-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거나 주택 임차비용 용자
6. 재난의 원인 분석과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 저감 계획, 비상 대처 계획(EAP) 수립,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 나. 재해 원인 분석, 침수 흔적 조사,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진단
 - 다. 피해 지역 공간 영상 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1호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과 응급 복구
 8.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⁸⁷⁾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 제 3 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6 조(운영기간)**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8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 7 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업무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와 같다.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 4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 3.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수습상황
- 4.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북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충청북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지역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3. 보고서식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자료 :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¹⁸⁸⁾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 제 5 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 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 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 4.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자료 :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¹⁸⁹⁾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주요 내용>

-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 1. 상황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 2. 현장 출동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출동준비부터 재난현장 도착까지의 단계

18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8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3. 현장 조치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 복구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이나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행하였을 때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 여부를 판단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될 때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이나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발견과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 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 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¹⁹⁰⁾

19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제 5 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7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총괄·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시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 관리
4.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 신고의 접수, 전파 및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중재 등
7.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33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은평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¹⁹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9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¹⁹²⁾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주요 내용>

제 5 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소속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19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4.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제18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총괄·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6.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 피해보상의 조정·중재 등
8.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24조(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종합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건, 사고 등 재난 상황 종합정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이 총괄한다.

제36조(재난예방조치)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 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¹⁹³⁾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행정대집행)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자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⁹⁴⁾

(10)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삭 제>

19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9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제 9 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¹⁹⁵⁾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점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¹⁹⁶⁾

19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9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¹⁹⁷⁾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운영기간) 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19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필요한 경우 부분부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참석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제16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영 제3조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7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 상황관리)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등)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

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⁹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봉사활동
2.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3.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
4. 그 밖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¹⁹⁹⁾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 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19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9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에 화재, 붕괴가 발생한 경우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이 집단 발생된 경우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²⁰⁰⁾

20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²⁰¹⁾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2 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 7 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

20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을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²⁰²⁾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6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문화활동육성·지원 및 재난예방 교육·홍보
2. 재난대응대비훈련 지원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4.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장비 구입 및 임차
5. 그 밖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

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²⁰³⁾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

2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20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파견근무자·소집대상범위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으로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에 초기 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 시 법제50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인적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23조(기반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9호의 기반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부산광역시와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4조(기반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0호의 기반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부산광역시와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난징후의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반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제11호의 기반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그 밖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기반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기반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²⁰⁴⁾

2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 3 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 4 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 3 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 1 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 2 절 재난현장 출동
- 제 3 절 재난현장 조치
- 제 4 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 4 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자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²⁰⁵⁾

20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AJAX>> (2016.9.26. 최종방문)

< 부록 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터뷰 내용

1. 미흡지자체

(1) 서울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무응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부산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시민안전실에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특별사법경찰과로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시민안전실 내에서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음, 총 129명의 직원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부분(자연재난, 천재지변)은 시민안전실 내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방부분이나 민간인 안전사고는 재난예방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사회재난은 상황관리과에서 담당함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재난대응빅보드 사업(전체 cctv 파악)을 통해 침수지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홍보사업을 개발 중에 있음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예방업무의 경우에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예방 등 안전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때 교육 또는 안전점검 등이 실시됨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규모가 심각한 4단계 정도가 되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협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이 훈련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것과 같이 평상시에도 연계하고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계속적으로 매뉴얼, 주요 재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비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3) 전북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생활안전과로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각 부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괄의 의미가 없고,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듯
- 안전정책관(22명), 사회재난과(11명), 자연재난과(16명), 생활안전과(14명)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정책관(안전총괄팀, 재난정보팀, 비상대책민방위팀, 경보통제소팀), 사회재난과(사회재난예방팀, 사회재난대응팀, 산업안전팀), 자연재난과(자연재난예방팀, 자연복구지원팀, 재난상황실팀), 생활안전과(생활안전관리팀, 안전교육문화팀, 민생특별사법경찰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부서별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음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분야별로 각각 대응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부서별로 다르며,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우수지자체

(1) 전남 광양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기획, 자연재난, 사회재난, 통합관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각 파트별로 각각 담당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4개 팀이고, 정원 17명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음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관리 조례/규칙에 근거함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업무팀마다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음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안전기획팀은 안전기획, 안전대책 등의 업무, 사회재난팀은 사회재난 업무 전반, 자연재난팀은 자연재난 업무 및 급경사지 등의 업무,

통합관제팀은 CCTV 등 통합관제 업무 전반을 담당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1년에 한번 위험도를 평가하고, 매년 4월마다 재난 공시를 하고 있음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안전문화운동과 위험시설개선분야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제1, 2위험지역/ 급경사지구 등을 지정·관리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시비예산을 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 장이 부서별로 투입되어 대응, 복구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장, 구청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고, 이에 책임참여기관등을 지자체 장이 요청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국민안전처에 2014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생겼음.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함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 경기 파주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로 조직되어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 안전기획팀, 안전협력팀, 안전대책팀, 방재시설팀, 민방위팀으로 구성됨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기획팀: 안전기획업무 총괄, 안전협력팀: 안전협력업무, 시설물 관리 등, 안전대책팀: 자연재해 등 위험지구 관리, 방재시설팀: 방재시설물 관리 등, 민방위팀: 민방위 훈련 등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보도자료, 홈페이지, 시보, 시정소식지 이용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찾아가는 안전교육(청소년, 어린이, 노인) 또는 자체적으로 홍보동영상 만들어서 송출함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시보에 매년(전년도 것으로) 공표하고, 안전교육훈련은 민방위훈련과 별개로 별도로 하고 있음. 가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사전에 합동점검 등을 같이 하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작년에 방제직(전문직)을 뽑기 시작함.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직들이 많이 없음.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음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소방기관이 소속되지만, 기초지자체는 소방이 소속되지 않는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음. 광역처럼 소방이 소속될 수 있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기초지자체에도 소방이 소속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경남 양산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로 구성되어 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함
- 안전기획, 안전관리, 자연재해, 민방위, 통합관제를 담당하고 있음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각각의 부서에서 분야별로 각자 담당함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매달 월별로 주요재난사고(8월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산불)에 대해서 과에서 주제별로 사고예방법 등을 홈페이지, 시SNS, 신문, 시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옥외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담당업무 아님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위기상황별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음. 실제 상황시에 이용할 수 있게 미리 관리하고 공표한 이후에 대처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고, 시에 있는 재난안전부서들이 같이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각자가 맡고 있는 부서별로 업무내용이 다르고, 재난현장에서는 재난현장통합 지휘소가 구성되고 있음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담당업무 아님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인력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우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 인원이 법에서 정한 정원보다 적음. 그래서 인력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있음(관리 차원에서)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안전총괄부서의 업무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그래서 소관 부처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좋겠음

(4) 경기 남양주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행정안전국 안에 안전기획과가 있음. 나머지는 분야별로 각 과에서 담당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기획과에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총괄하고 있음
- 안전기획과에 안전기획팀, 예방안전팀, 자연재난팀, 사회재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장과 팀원들이 있음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기획, 예방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안전기획팀: 지역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예방안전팀: 건축물 유지 관리 등, 자연재난팀: 유수지 관리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팀: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한국훈련 등 실시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매달 캠페인을 실시 또는 안전지킴이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또, 부서별로 안전점검활동을 통해 홍보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주민, 전문가를 뽑아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안전전문강사를 모집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부서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후에 안전기획과에서 큰 틀에서 총괄함. 또한 주관부서에서 대응하되, 부서별로 업무를 나눠서 대응하도록 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부서별로 맡은 업무에 따라 달라짐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협업부서로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연계되고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대응 매뉴얼에 정해져 있음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험이 필요할 것이나, 재난발생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 경남 함안군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도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등 담당부서별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업무 수행
- 재난안전(4명), 민방위(3명), 복구지원(4명), 하천관리(3명), 낙동강관리(4명) 업무로 나누어져 있음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재난안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복구계획 수립, 민방위: 비상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 복구지원: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감독,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하천통계 관리, 낙동강관리: 유지, 관리사업 시행, 소하천시설 복구사업(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수시로 전단지,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장회의를 거쳐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캠페인을 통하거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민방위훈련이나 을지연습 시에 재난안전훈련도 같이 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대책본부는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되, 해당 부서에서 전담하여 대응함. 또한 여기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부 등의 부서들이 같이 협업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비상연락망으로 구축하고 있음
-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6) 경기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과, 공원녹지과로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각 팀마다 총괄하고 있음
- 안전총괄팀(5명), 재난관리팀(5명), 복구지원팀(3명), 민방위팀(3명), 안전점검팀(3명), 안전기동팀(4명)으로 구성됨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안전총괄팀(용인시 자율방재단,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 등), 재난관리팀(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관리), 복구지원팀(자연재해관리, 재해예방 대책사업 관리), 민방위팀(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장비관리), 안전점검팀(안전신문고 추진,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안전기동팀(시기별 안전 점검 업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홍보물, 홈페이지, 리플릿, 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지역안전도평가를 1년에 1번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음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예를 들어 폭염같은 경우, 방문서비스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였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풍수해대비훈련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분야별로 통제함
-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분야별로 다름. 예컨대 건설part의 경우에는 중장비 동원 등의 업무 수행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유관기관과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부서별로 다름
-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7) 충북 충주시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다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이 연관되어 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함
- 안전총괄팀(4명), 안전재난관리팀(7명), 자연재난팀(3명), 비상대비민방위팀(5명)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과 설치 위해 정부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지침이 내려옴. 예를 들어 안전을 강조하는 등 그 정권에서 강조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도별

재난안전실, 시군별 안전총괄과로 조직이 개편됨

2. 재난안전관리 업무

-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언론홍보, 전광판, 시내버스 외벽, SNS 등 다양한 홍보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시설물(교량, 옹벽,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이는 법정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매달 1회씩 캠페인 실시,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보완 및 홍보, 지도를 하고 있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 공표가 됨. 또한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처하도록 정해져 있음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경찰, 소방, 안전관련 봉사단체, 공군, 군부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되고 있음
- 유사시 구조활동, 대응, 복구 업무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연계해서 수행함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재난안전관리와 이에 대한 총괄 기능을 활성화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8) 경남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건설본부 밑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로 구성
-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업무별로 각각 총괄하지만, 제1부서는 재난안전정책과가 총괄
 - 안전기획담당, 안전문화담당, 안전점검담당, 비상대비담당, 특별사법경찰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음
-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정책과 내에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점검, 비상대비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안전기획담당: 안전, 재난관리정책 총괄, 안전문화담당: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 기획, 안전점검담당: 안전관리 지도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홍보방송, 홈페이지 게재, 사안에 따라 팸플릿 배부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답변×(업무범위 아님)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실시하고는 있지만 부서업무가 아님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답변×(업무범위 아님)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음(상시 설치는 아님)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9) 울산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무응답)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0) 충북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로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사회재난은 재난관리과, 자연재난은 취수방재과에서 담당함(각 분야별로 총괄부서가 다른 듯)
- 안전정책과에 안전정책팀, 안전문화팀, 비상대비민방위팀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계획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은 안전정책팀, 안전문화팀, 그리고 민방위 훈련 등 정보통제 업무는 비상대비민방위팀에서 담당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사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버스광고, TV 자막, 팜플렛 배부 등을 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업무범위가 아님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민간단체(자율방재단) 등이 잘 구성되어 있음. 특히 '안전모니터봉사

단'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민교육을 하고 있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1달에 한번씩 민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자연재난 복구팀이 구성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비상연락망은 항상 구축되어 있고, 경찰, 소방 등과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고 있음

- 경찰: 사회질서유지, 소방: 구조, 복구업무 수행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방재안전과 관련된 팀이 이번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전문가 등의 직원이 많이 없음. 직원들이 많이 충원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함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1) 서울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건설안전교통국에 안전치수과가 있음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함
- 재난안전팀(7명), 하수팀(6명), 하천관리팀(6명), 지하수기전팀(6명)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재난안전팀(재난관리 실태점검, 셉테드(CPTED) 추진), 하수팀(하차검사 관련 업무), 하천관리팀(수방업무), 지하수기전팀(유출지하수관리업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주민들로 구성된 안전단체인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매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안전훈련을 같이 실시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2) 서울 성동구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구성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함
- 도시안전팀(7명), 보행환경개선팀(4명), 광고물관리팀(9명), 가로정비팀(6명)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도시안전팀(재난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행환경개선팀(통합배포대 총괄, 손실보상), 광고물관리팀(불법광고물 정비, 재난의 수습, 복시 지원계획), 가로정비팀(가로환경정비)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1달에 한번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홍보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안전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안전관리과에서 복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
-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안전관리계획(기관별)을 수립함.
-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3) 대전 서구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부구청장 밑으로 재난안전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음(국이 아님)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총괄
- 안전정책(6명), 사회재난(1명), 민방위(2명), 재난복구(7명)담당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담당업무를 나누어서 재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지방하천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구청 홈페이지, 구정 방송,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함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소방서를 빌려서 연초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도 실시함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1년에 4번 기본 훈련과 함께 중간중간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재난안전담당관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합동점검, 훈련 등을 수시로 같이 실시하고 있음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 법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4) 부산 금정구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 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구성)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안전도시국에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로 구성됨

2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부서(국,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가? 있다면, 총괄부서의 재난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 도시안전과장 + 안전관리팀(8명), 재해예방팀(4명), 민방위팀(4명), 도로정비팀(7명), 기전팀(5명), 광고물팀(7명)으로 구성

3 재난안전관리 조직설치 및 구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재난안전관리 업무

1 재난안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 업무분장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안전관리팀(재난안전 및 대책본부 운영, CCTV 설치공사), 재해예방팀(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민방위팀(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 민방위 시설장비), 도로정비팀(도로보수, 가로정비 차량운행), 기전팀(도로조명 사업계획), 광고물팀(광고물 관리)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

3.1 재난 예방·대비 및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관리 지자체 홍보방법, 홍보내용 등

-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침수예상 지역에 방송, 전광판,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단, 통장 등에게 알려줘서 홍보하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현장지휘본부를 만들고

나서 부서별로(건축과는 건축물 담당 등) 주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위험도 평가 주기, 방법, 절차 등

- 자연재난은 경보 및 매뉴얼에 따르도록 함, 주의보나 경보냐에 따라서 다름

-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향상 교육방법, 주기 등

- 매월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5~11월에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소화기,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발생 우려 지역 공표방법, 정보공개, 대피요령, 훈련 등

- 우려 지역은 방송을 하거나 각 동에 알리고, 국민운동단체단 등에게 문자를 발송함. 훈련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대비운동,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의 보호훈련 등을 하고, 연말에는 산불대비, 폭설대비 훈련을 할 예정임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1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조직체계 및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함

2 대응·복구(반, 팀)의 업무분장 및 업무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대책본부는 13개의 협업부서가 같이 구성되는데, 거기에다가 시설응급복구를 위해 건설과, 복구과, 공원녹지과 등 5개 과가 더 추가되어 실제로 17개 과에서 협업이 이루어짐. 이 때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소관부서과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지시함

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지역 경찰, 소방, 의료, 전력, 가스, 도로 등)과의 연계 시스템

1 효율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방·대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구축되어 있다면, 각 기관별 역할은 무엇인가?

-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상수도사업본사 등 혼련시 다같이 하고 있음
-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누출, 가스배관 담당, 전기안전공사는 전기부분 담당

2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 현재 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에 있어 한계는 무엇인가?

- 담당자 의견 기술(제도, 예산, 기술, 계획 등 자유의견 기재)

7. 효율적·체계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2~3년이 지나면 소관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짐. 실제로도 조금씩 배우다가 인사발령이 돼서 소용이 없어짐. 따라서 5~10년과 같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됨